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
의 견 서

결산검사 의견서

단양군수 귀하

2020년 4월 22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로부터 단양군 2019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0년 4월 3일부터 2020년 4월 22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단양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단양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단양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공유재산·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결산 검사 위원

| | |
|------|-----|
| 대표위원 | 조성룡 |
| 위원 | 김진태 |
| 위원 | 박상용 |
| 위원 | 임종만 |



〈 총 평 〉

- 단양군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공유재산·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다만, 1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결산의 사후적 특징과 집행기관의 전례답습 행정 행태에 기인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의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재차 강조.
- 결산검사 결과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의 차액이 각각 약 14억원, 85억원인 점이 확인되어 정확한 세수추계로 자체재원 확충에 철저를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
 - 지방세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6.04% 발생되어 미수납액에 대한 요인별, 유형별 분석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처분 실시 등 징수대책을 강구

〈 총 평 〉

- 다음연도로 이월하고도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 일반회계는 21억 7,100만원, 특별회계는 7억 7,500만원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예산 집행 잔액도 3억 1,000만원 발생한 점을 확인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추경 편성 등으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반환사업이 최근 3년간 84건에 16억 8,600만원 발생 확인, 이는 결국 행정력 낭비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추후 보조사업 포기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도 강력히 고려
- 매년 대동소이하게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 최소화, 결산결과 환류를 통한 집행률 제고, 예산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은 금번 결산검사에서도 확인 되는바 전향적인 개선 노력이 꾸준히 요구됨
-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계상 개선을 권고.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현액의 40.69%인 50억 5,7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97.78%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현액의 9.73%인 17억 7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63.02%임. 한편, 2개의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2018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사용한 2,000만원뿐인 것으로 확인됨. 예비비 편성 시에는 연도별 집행실적과 시설운영 평가 시 권고하는 수준 등을 고려하되 긴급한 수요에도 대비하는 한편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줄임으로써 단양군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총 평 〉

- 기타 분야에서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개선이 요구된 권고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후속조치 결과 미흡을 지적
- 단양관광관리공단의 경영개선과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사업수지 평균 비율 감소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저등급을 확인하며, 시설보완과 홍보 강화 등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긴 안목에서 독립채산의 책임운영을 위한 단양관광관리공단 운영 방식의 개선도 검토해 볼 것을 권고
- 양방산 전망대는 설치 목적에 맞는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 강구, 관광분야 조례의 적기 정비 등 관광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 청소년수련관의 월별, 연간 최대 수요전력 분석을 반영한 계약전력 변경 시 연간 2,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됨. 양백폭포, 수양개 전시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과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각 전기기구의 최대 출력량을 합산하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적정 소비전력을 산정하여 계약전력을 변경하는 등 전기사용량 절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
- 단양군보건소 태양광 발전시설 정상가동 방안 강구, 천동Par3 골프장의 캠핑장 변경사업 후 수입 감소에 따른 활성화 방안 등 시설운영 개선 주문

〈 총 평 〉

- 위와 같이 언급된 결산검사 위원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겠음.

- 2019년도 결산검사 우수사례로는
 - 2019년 전국 유일 세정부문 3관왕을 달성한 세입증대 및 예산 절감 사례임. 재무과에서는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골프장 취득가액 누락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10억원의 세입을 증대한 사례와 단양군 야경명소로 발돋움한 수양개빛터널을 민간투자(BTO) 방식-수익자쿼터제로 개발·운영해 3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입장료 수입의 일정부분인 35억원의 세외수입 증대 가능성을 제기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고 부상으로 2억원의 교부세를 지원 받았음. 또한, 비만세의 지방세 도입에 대한 세정연찬 결과를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발표하여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세정분야 만큼은 작지만 강한 단양군의 위상을 제고

 - 문화체육과에서 전국 단위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금과 대회 시상금 등을 지역상품권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체육행사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재원의 관외 유출을 방지한 모범적 사례로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자 함. 2019년 한 해 동안 전지훈련 2회, 체육대회 6회의 참가팀 지원금과 시상금으로 총 1억 2,370만원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 함.

〈 총 평 〉

- 다음, 수범사례로 최근 언론 및 방송사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의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사업임. 지역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을 수량에 관계 없이 순회 수집하여 도매시장 출하를 통한 농가일손과 경영비 절감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와 유통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전담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단양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모범사례임.
- **마지막, 수범사례로 선제적 재난재해 예방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임.** 안전건설과에서는 우기 홍수기 시 하천 범람 재해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하천 관리 저해요인과 지역주민의 단골 민원으로 부상한 하천 내 갈대 및 수목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하천정비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5개소 16km, 지방하천 21개소 18km 구간을 정비하여 선제적 재난재해 예방과 수질 오염원 제거는 물론 하천 환경정비에 따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례임.
- 이상과 같이, 말씀 드린 사항은, 결산검사위원이 재정운용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고자 개선 및 권고하는 사항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람.
-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림.

1.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2020. 4. 3. ~ 4. 22.(20일간)

2. 결산검사 위원: 총 4명

| 직 위 | 성명 | 업 무 분 장 | 비고 |
|------|-----|---|------------|
| 대표위원 | 조성룡 | 결산검사 총괄 | 군의회 의 원 |
| 위 원 | 김진태 | · 정책기획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단양관광관리공단 · 수질개선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 전 직 공무원 |
| 위 원 | 임종만 | · 세입부과· 징수, 군금고 · 재무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 전 직 공무원 |
| 위 원 | 박상용 | · 자치행정과, 관광정책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 전 직 공무원 |

3. 결산검사 세부일정

| 일자별 | 검 사 내 용 | 비 고 |
|----------|--|-----|
| 4. 3.(금) | · 세입, 세출결산 자료 금고 대사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검토 · 세입, 세출 결산 자료 검토 | 개회식 |
| 4. 4.(토) | · 자료 수집 | |
| 4. 5.(일) | · 자료 수집 | |

| 일자별 | 검 사 내 용 | 비 고 |
|-----------|---|-----|
| 4.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금 결손처분 내역 검토 ·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검토 · 세출예산 집행잔액 관련 자료 검토 | |
| 4. 7.(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금 과오납 현황 검토 · 이월사업비 내역 검토 · 세출잔액 원인별 분석 자료 검토 · 보조금 관련 자료 검토 | |
| 4. 8.(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관련 자료 검토 ·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자료 검토 · 결산서(안) 검토 | |
| 4. 9.(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 검토 · 예비비, 계속비 지출 내역 검토 · 보조금 집행 내역 검토 | |
| 4. 10.(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관련 자료 검토 ·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자료 검토 | |
| 4. 11.(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수집 | |
| 4. 12.(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수집 | |
| 4. 1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결산 자료 검토 · 공유재산, 물품 결산 자료 검토 · 기금결산 자료 검토 | |
| 4. 14.(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조사 등 검토 | |
| 4. 15.(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수집 | |
| 4. 16.(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검토 · 성과보고서 검토 · 성인지 결산 자료 검토 · 예산절감 내역 검토 | |

| 일자별 | 검 사 내 용 | 비 고 |
|-----------|--|-----|
| 4. 17.(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보고서 검토 · 기금결산 자료 검토 · 부서별 신문 및 간행물 | |
| 4. 18.(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수집 | |
| 4. 19.(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수집 | |
| 4. 2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정리 | |
| 4. 21.(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 2019회계 결산 현황 -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 |
| 4. 22.(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검사 강평 및 결산검사 종료 선언 | 폐회식 |

4. 검사사항

-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5.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간 토론 등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단양군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일반회계 | 세 입 | 333,976,439 | 357,628,191 | 422,877,976 | 457,761,391 | 505,371,016 |
| | 세 출 | 249,158,064 | 254,001,057 | 296,200,561 | 328,611,800 | 391,130,507 |
| | 결산상잉여금 | 84,818,375 | 103,627,134 | 126,677,415 | 129,149,591 | 114,240,509 |
| 특별회계 | 세 입 | 38,008,567 | 30,187,523 | 29,186,869 | 38,032,373 | 46,948,314 |
| | 세 출 | 24,092,899 | 19,288,579 | 17,741,945 | 16,944,395 | 24,899,717 |
| | 결산상 잉여금 | 13,915,668 | 10,898,944 | 11,444,924 | 21,087,978 | 22,048,597 |
| 기 금 | 수 입 | 7,096,025 | 7,150,357 | 6,284,798 | 6,185,198 | 6,094,997 |
| | 지 출 | 238,376 | 1,134,970 | 302,783 | 627,380 | 849,240 |
| | 결산상 잉여금 | 6,857,649 | 6,015,387 | 5,982,015 | 5,557,818 | 5,245,757 |
| 총 계 | 세입(수입) | 379,081,031 | 394,966,071 | 458,349,643 | 501,978,962 | 558,414,327 |
| | 세출(지출) | 273,489,339 | 274,424,606 | 314,245,289 | 346,183,575 | 416,879,464 |
| | 결산상 잉여금 | 105,591,692 | 120,541,465 | 144,104,354 | 155,795,387 | 141,534,863 |

2019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늘어난 것은 지방교부세,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전년대비 2,552천원(22.27%) 증가한 14,009천원 정도 임.

세출은 전년대비 70,695,889천원(20.42%) 증가하였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

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및관광 598억원(15.29%), 사회복지 596억원(15.26%), 국토및지역개발 487억원(12.84%) 등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67.66%), 공공질서및안전(65.70%), 일반공공행정(30.00%), 보건(17.97%) 등임. 세입(수입) 대비 세출(지출)은 기금 포함 74.65%의 집행율을 보임.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재정상태 | | | 재정운영 | | | 비 고 |
|-------|-----------|--------|-----------|---------|---------|----------|-----|
| | 총자산 | 총부채 | 순자산 | 총수익 | 총비용 | 운영차액 | |
| 2019년 | 1,824,539 | 32,298 | 1,792,242 | 384,019 | 325,510 | (58,510) | |
| 2018년 | 1,764,906 | 32,115 | 1,732,790 | 347,109 | 298,353 | (48,756) | |
| 증 감 | 59,633 | 183 | 59,452 | 36,910 | 27,157 | (9,754) | |

2019년 순자산(총자산 - 총부채)이 전년대비 59,452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43%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총비용 - 총수익)은 전년대비 9,754백만원(20.01%) 감소하였음.

단양군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비 고 |
|-------------------|------|------|------|------|------|-----|
| 자치단체 채무계 a(b+c+d) | 0 | 0 | 0 | 0 | 0 | |
| 공 채 b | 0 | 0 | 0 | 0 | 0 | |
| 차 입 금 c | 0 | 0 | 0 | 0 | 0 | |
| 채무부담행위 d | 0 | 0 | 0 | 0 | 0 | |
| 지방공기업 채무 e | 0 | 0 | 0 | 0 | 0 | |
| 채무총합계 f(a+e) | 0 | 0 | 0 | 0 | 0 | |

2019회계연도 결산서상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0원임

(2)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2019회계연도 단양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text{재정자립도} = \underline{10.0\%} \left(\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세입결산규모}} * 100 \right)$$

- ※ 지방세(17,648,359,180원):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23,890,707,280원):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결산규모(415,332,275,920원) : 총수납액 - 전년도이월사업비

$$\text{재정자주도} = \underline{62.6\%} \left(\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일반회계 세입결산규모}} * 100 \right)$$

- ※ 자체수입(41,539,066,460원):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218,477,442,700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단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0.0%로 전년도 9.9%보다 0.1% 증가하였고,
재정자주도도 62.6%로 전년도 60.9%보다 1.7%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 회 계 별 | 예 산 현 액 | 세입결산액(A) | 세출결산액(B) | 차인잔액 (C=A-B) |
|-------------|--------------------|--------------------|--------------------|--------------------|
| 합 계 | 535,001,785 | 552,319,330 | 416,030,223 | 136,289,107 |
| 일 반 회 계 | 488,161,576 | 505,371,016 | 391,130,507 | 114,240,509 |
| 특 별 회 계 | 46,840,209 | 46,948,314 | 24,899,717 | 22,048,597 |
| (수도)공기업특별회계 | 12,424,912 | 11,938,173 | 7,253,916 | 4,684,257 |
| (기타) 특별회계 | 34,415,297 | 35,010,141 | 17,645,801 | 17,364,340 |

| 회 계 별 | 이 월 액(D) | | | | 현년도 채무상환 | 순세계잉여금 (E=C-D) |
|------------------|-------------------|---------------------------------|-------------------|------------------|-------------|-------------------|
| | 명 시 | 사 고 | 계속비 | 보조금 반납금 | | |
| 합 계 | 51,879,742 | 17,886,450 (612,000) | 12,095,416 | 3,563,760 | 0 | 50,863,739 |
| 일 반 회 계 | 45,234,438 | 16,949,570 (612,000) | 12,095,416 | 3,296,932 | 0 | 36,664,154 |
| 특 별 회 계 | 6,645,304 | 936,880 | 0 | 266,828 | 0 | 14,199,585 |
| (수 도) 공기업특별회계 | 0 | 0 | 0 | 0 | 0 | 4,684,257 |
| (기타) 특별회계 | 6,645,304 | 936,880 | 0 | 266,828 | 0 | 9,515,328 |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52,319,330천원으로 예산현액 535,001,785천원보다 17,317,545천원(103.2%)이 더 수납되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5.3%인 416,030,223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6,289,107천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비 51,879,742천원, 사고이월비 17,886,450천원, 계속비 12,095,416천원과 보조금 반납금(반납액+집행잔액) 3,563,760천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0,863,739천원이다.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 구 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결 산 액 | 488,161,576 | 508,917,428 | 505,371,016 | 433,178 | 3,113,234 |
| 결산확인액 | 488,161,576 | 508,917,428 | 505,371,016 | 433,178 | 3,113,234 |
| 차 액 | 0 | 0 | 0 | 0 | 0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505,371,016천원은 예산현액의 103.5%로써 17,209,440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3%이고, 불납결손액은 433,178천원으로 무재산 255,782천원, 시효소멸 80,902천원, 체납처분중지 61,224천원, 배분금액부족 35,160천원 등으로 발생하였다.

○ 세입 결산액 검증(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금 발생 증가)

초과세입금은 전년도보다 11,543,866천원(203.8%) 증가한 17,209,440천원 발생하였다. 초과세입금이 발생한 주요 사유를 보면 지방소비세 및 출납폐쇄 이후 수납된 국도비 보조금 등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그외수입(59억원) 증가와 지방교부세(62억원) 증가, 충북 도세 규모 증가로 인한 조정 교부금(45억원) 증가 등으로 초과세입금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 불납결손 처분액 증가

2018년 불납결손액은 수납액 457,761,392천원의 0.01%인 30,803천원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수납액 505,371,016천원의 0.08%인 433,178천원을 결손 처분하여 전년도 불납결손액 보다 402,375천원(1,30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결손 처분별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 255,782천원으로 전체 결손 처분액

의 59.04%를 차지하고 이밖에 시효소멸, 체납처분증지, 배분금액부족 순으로 결손 처분되었다.

○ 세입결산액 검수

2019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액과 금고수납계산서의 금액은 일치하였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 수 납 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 액 |
|-------------|-------------|-----|
| 505,371,016 | 505,371,016 | 0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천원, %)

| 연도별 | 예산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비율 |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비율 |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액 비율 |
|------|-------------|-------------|-------------|---------|---------------|----------------|-----------------|
| 2019 | 398,122,836 | 508,917,428 | 505,371,016 | 433,178 | 127.83 | 99.30 | 0.09 |
| 2018 | 376,659,320 | 461,123,296 | 457,761,392 | 30,803 | 122.42 | 99.27 | 0.01 |
| 증감 | 21,463,516 | 47,794,132 | 47,609,624 | 402,375 | 5.41 | 0.03 | 0.08 |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전년도 이월금, 그외수입(지방소비세, 출납폐쇄 후 수납된 국도비 보조금 등) 등의 증가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457,761,392천원보다 47,609,624천원이 증가한 505,371,016천원이 수납되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30,803천원보다 402,375천원이 증가한 433,178천원이다. 불납결손액이 증가한 사유는 무재산, 시효소멸, 체납처분증지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천원)

| 구 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 | 미수납액 | |
|-------------|--------------------|--------------------|--------------------|----------------|------------------|-----------|
| 합 계 | 488,161,576 | 508,917,428 | 505,371,016 | 433,178 | 3,113,234 | |
| 지방세 | 소 계 | 17,522,901 | 18,973,649 | 17,648,359 | 179,113 | 1,146,177 |
| | 주민세 | 858,000 | 1,130,976 | 1,112,188 | 31 | 18,757 |
| | 재산세 | 2,518,901 | 3,029,505 | 2,951,605 | 22 | 77,878 |
| | 자동차세 | 6,771,000 | 6,664,502 | 6,395,604 | 357 | 268,541 |
| | 담배소비세 | 2,400,000 | 2,367,313 | 2,367,313 | | |
| | 지방소득세 | 4,865,000 | 4,710,258 | 4,585,374 | | 124,884 |
| | 지난년도수입 | 110,000 | 1,071,095 | 236,275 | 178,703 | 656,117 |
| 세외수입 | 소 계 | 17,572,808 | 26,111,829 | 23,890,707 | 254,065 | 1,967,057 |
| | 재산임대수입 | 1,291,840 | 1,767,480 | 1,689,016 | | 78,464 |
| | 사용료 수입 | 8,988,529 | 8,250,691 | 8,232,058 | | 18,633 |
| | 수수료수입 | 621,312 | 710,252 | 704,525 | | 5,727 |
| | 사업수입 | 1,052,545 | 1,219,965 | 1,218,027 | | 1,939 |
| | 징수교부금수입 | 410,000 | 431,750 | 431,750 | | |
| | 이자수입 | 1,340,000 | 1,741,782 | 1,741,782 | | |
| | 재산매각수입 | 31,000 | 7,634 | 7,634 | | |
| | 부담금 | 700,500 | 713,282 | 713,282 | | |
| | 과징금및과태료 | 69,221 | 235,423 | 151,984 | | 83,439 |
| | 기타수입 | 2,967,861 | 8,915,415 | 8,876,411 | | 39,003 |
| | 지난년도수입 | 100,000 | 2,118,155 | 124,238 | 254,065 | 1,739,852 |
| | 지방교부세 | 191,403,591 | 197,649,658 | 197,649,658 | | |
| 조정교부금 등 | 16,336,766 | 20,827,785 | 20,827,785 | | | |
| 보조금 | 109,676,719 | 109,650,463 | 109,650,463 | | |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135,648,791 | 135,704,043 | 135,704,043 | |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3.49%인 17,648,359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세수의 4.73%인 23,890,707천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는 39.11%인 197,649,658천원, 조정교부금등은 4.12%인 20,827,785천원, 보조금은 21.70%인 109,650,463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85%인 135,704,043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결 산 액 | 398,122,836 | 488,161,576 | 391,130,507 | 74,891,423 | 18,850,614 |
| 결산확인액 | 398,122,836 | 488,161,576 | 391,130,507 | 74,891,423 | 18,850,614 |
| 차 액 | 0 | 0 | 0 | 0 | 0 |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임.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398,122,836천원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90,038,740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88,161,576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12%에 해당하는 391,130,507천원이다.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612,000천원을 포함한 74,891,423천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 이월액은 45,234,438천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612,000천원을 포함한 17,561,570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12,095,416천원이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6%에 해당하는 18,850,614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지출잔액(153억원), 보조금정산잔액(17억원), 예비비(11억원), 예산절감액(5억원),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2억원), 낙찰차액(0.1억원) 순으로 사유에 기인한다.

○ 이용·전용·이체

예산 이용은 없음. 예산 전용은 6건, 170,085천원으로 전용 사유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이고, 예산 이체는 548건, 35,377,578천원으로 이체 사유는 2019년 1월 11일자 및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이다.

○ 세출결산액 검수

2019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지출액과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은 일치하였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 지 출 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 액 |
|-------------|-------------|-----|
| 391,130,507 | 391,130,507 | 0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 2018 지출액 | 2019 회계연도 | | | 전년대비증감 | |
|-----------|-------------|-------------|-------------|-------|------------|--------|
| |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율 | 금액 | 비율 |
| 합 계 | 328,611,800 | 488,161,576 | 391,130,507 | 80.12 | 62,518,707 | 19.03 |
| 일반공공행정 | 19,689,062 | 32,611,426 | 27,621,496 | 84.70 | 7,932,434 | 40.29 |
| 공공질서 및 안전 | 3,172,689 | 5,910,630 | 3,992,188 | 67.54 | 819,499 | 25.83 |
| 교육 | 961,529 | 851,331 | 724,249 | 85.07 | △237,280 | △24.68 |
| 문화및관광 | 52,600,532 | 83,804,428 | 59,841,449 | 71.41 | 7,240,917 | 13.77 |
| 환경보호 | 35,575,222 | 52,836,758 | 46,406,301 | 87.83 | 10,831,079 | 30.45 |
| 사회복지 | 53,259,431 | 64,653,054 | 59,693,897 | 92.33 | 6,434,466 | 12.08 |
| 보건 | 6,970,962 | 14,318,726 | 9,433,634 | 65.88 | 2,462,672 | 35.33 |
| 농림해양수산 | 48,712,418 | 62,440,719 | 48,388,687 | 77.50 | △323,731 | △0.66 |
| 산업,중소기업 | 6,410,164 | 8,342,129 | 6,770,006 | 81.15 | 359,842 | 5.61 |
| 수송 및 교통 | 20,593,665 | 37,759,207 | 26,872,919 | 71.17 | 6,279,254 | 30.49 |
| 국토및지역개발 | 32,497,696 | 68,090,507 | 50,177,490 | 73.69 | 17,679,794 | 54.40 |
| 예 비 비 | | 1,105,278 | | | | |
| 기 타 | 48,168,430 | 55,437,383 | 51,208,190 | 92.37 | 3,039,760 | 6.31 |

2019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일반공공행정 27,621,496천원, 공공질서및 안전 3,992,188천원, 교육 724,249천원, 문화및관광 59,841,449천원, 환경보호 46,406,301천원, 사회복지 59,693,897천원, 보건 9,433,634천원, 농림해양수산 48,388,687천원, 산업·중소기업 6,770,006천원, 수송및교통 26,872,919천원, 국토및지역개발 50,177,490천원, 기타 51,208,190천원이다.

전년대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54.40%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0.29%로 두 번째 큰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교육분야는 마이너스 24.68%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3)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 구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
|----------|------------|------------|------------|-----------|---------|
| 합계 | 46,840,209 | 47,472,144 | 46,948,314 | | 523,830 |
| 공기업특별회계 | 12,424,912 | 12,375,128 | 11,938,173 | | 436,955 |
| 수도사업 | 12,424,912 | 12,375,128 | 11,938,173 | | 436,955 |
| 기타특별회계 | 34,415,297 | 35,097,015 | 35,010,141 | | 86,874 |
| 의료급여기금 | 163,831 | 164,513 | 164,513 | | |
| 주차장 | 1,044,235 | 1,484,707 | 1,437,079 | | 47,628 |
| 산업단지조성자금 | 7,569,065 | 7,572,281 | 7,572,281 | | |
| 수질개선 | 17,542,841 | 17,826,611 | 17,787,365 | | 39,246 |
| 군립임대아파트 | 8,095,325 | 8,048,903 | 8,048,903 | | |
| 결산확인액 | 46,840,209 | 47,472,144 | 46,948,314 | | 523,830 |
| 차액 | 0 | 0 | 0 | | 0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46,948,314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100.2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0%로써 전년도와 비교하면 0.74%가 높아졌으며 523,830천원이 미수납 되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0%이다.

○ 세입 결산액 검수

2019회계연도 결산서 각 특별회계 세입액과 금고수납계산서의 금액은 일치하였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수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 수납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액 |
|------------|-------------|----|
| 46,948,314 | 46,948,314 | 0 |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합 계 | 42,111,323 | 46,840,209 | 24,899,717 | 7,582,184 | 14,085,403 |
| 공기업특별회계 | 11,462,198 | 12,424,912 | 7,253,916 | | 5,170,996 |
| 수도사업 | 11,462,198 | 12,424,912 | 7,253,916 | | 5,170,996 |
| 기타특별회계 | 30,649,125 | 34,415,297 | 17,645,801 | 7,582,184 | 8,914,406 |
| 의료급여기금 | 163,831 | 163,831 | 157,672 | | 82 |
| 주차장 | 1,044,235 | 1,044,235 | 816,505 | | 227,730 |
| 산업단지조성자금 | 7,569,065 | 7,569,065 | 7,004,379 | 24,568 | 540,118 |
| 수질개선 | 13,776,669 | 17,542,841 | 7,275,507 | 7,557,616 | 2,442,890 |
| 군립임대아파트 | 8,095,325 | 8,095,325 | 2,391,739 | | 5,703,586 |
| 결산확인액 | 42,111,323 | 46,840,209 | 24,899,717 | 7,582,184 | 14,085,403 |
| 차 액 | 0 | 0 | 0 | 0 | 0 |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임.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자금없는 이월액 없음.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42,111,323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728,886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6,840,209천원이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3.16%에 달하는 24,899,717천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6,645,304천원, 사고이월액은 936,880천원이 발생하였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0.07%에 해당하는 14,085,403천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대비 6,327,420천원(△31%)이 감소되었으며,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와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불용액(예비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세출 결산액 검수

2019회계연도 결산서 각 특별회계 지출액과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은 일치하였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 지출액 |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 차액 |
|------------|-------------|----|
| 24,899,717 | 24,899,717 | 0 |

3. 예비비 결산

예비비 사용액을 확인한 바, 총 2건 163,95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0,270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33,68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선관위 부담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예방 방지단 운영 등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에 적정하게 집행하였다.

2019년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회계별 | 건수 | 지출결정액 (가) | 지출액 (나) | 이월액 (다) | 집행잔액 (가-나-다) | 비 고 |
|------------|----|--------------|------------|------------|-----------------|-----|
| | | | | | | |
| 합 계 | 2 | 163,958 | 30,270 | 0 | 133,688 | |
| 일 반 회 계 | 2 | 163,958 | 30,270 | 0 | 133,688 | |
| 기타 특별회계 | 0 | 0 | 0 | 0 | 0 | |

4. 이월사업비 결산

검사 결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44건, 사고이월 67건, 계속비이월 8건, 총 219건으로써 239,229,189천원 중 131,141,899천원을 지출하였고, 82,473,608천원을 이월하였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세부사업명 | 건수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 계 | | 144건 | 144,342,620 | 83,635,498 | 51,879,742 | 8,827,380 |
| 일반회계 | 행복마을 사업 추진 등 | 130건 | 131,875,389 | 79,538,371 | 45,234,438 | 7,102,580 |
| 기타 특별회계 | (산업단지) 단양산업 단지관리 (수질개선) 환경기초 시설운영관리 등 | 1건 13건 | 175,000 12,292,231 | 142,369 3,954,758 | 24,568 6,620,736 | 8,063 1,716,737 |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전년 71,188,314천원 대비 △27.12%인 51,879,742천원이 감소된 51,879,742천원이다.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세부사업명 | 건수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 계 | | 67건 | 79,344,615 | 44,059,863 | 18,498,450 (612,000) | 16,786,302 |
| 일반회계 |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등 | 64건 | 70,459,560 | 41,504,074 | 17,561,570 (612,000) | 11,393,916 |
| 기타 특별회계 | (수질개선) 환경기초 시설 운영관리 등 | 3건 | 8,885,055 | 2,555,789 | 936,880 | 5,392,386 |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전년 16,550,730천원 대비 11.77%인 1,947,720천원이 증가된 18,498,450천원이다.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세부사업명 | 건수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 계 | | 8건 | 15,541,954 | 3,446,538 | 12,095,416 | 0 |
| 일반회계 | 농촌중심지 활성화 (어상천면) 등 | 8건 | 15,541,954 | 3,446,538 | 12,095,416 | 0 |

2019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액은 전년 7,028,582천원 대비 72.09%인 5,066,834천원이 증가된 12,095,416천원이다.

사업부서 및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이월사업을 결정할 때 사업성격, 사업준공일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기금의 결산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금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 당해연도말 조성액 |
|--------|-------------|--------------|---------|---------|--------------|
| | | 증가 또는 감소액 | 조성액 | 사용액 | |
| 계 | 5,552,447 | △306,690 | 542,550 | 849,240 | 5,245,757 |
| 양성평등기금 | 513,102 | △6,572 | 6,952 | 13,524 | 506,530 |
| 자활기금 | 559,343 | △3,652 | 21,348 | 25,000 | 555,690 |
| 식품진흥기금 | 120,280 | 7,658 | 7,658 | | 127,939 |
| 농업발전기금 | 3,271,507 | 44,165 | 44,165 | | 3,315,672 |
| 재난관리기금 | 1,088,215 | △348,290 | 462,426 | 810,716 | 739,925 |

2019 회계연도 말 현재 5개 기금을 운용중이며,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5,552,447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42,550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849,240천원을 공제한 5,245,757천원입니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5년 평균증가율 |
|-----------|-------|-------|-------|-------|-------|----------|
| 전년도말 조성액 | 6,696 | 6,858 | 6,015 | 5,642 | 5,552 | △4.6 |
| 당해연도 조성액 | 400 | 293 | 270 | 543 | 543 | 7.9 |
| 당해연도 사용액 | 238 | 1,135 | 303 | 627 | 849 | 37.4 |
| 당해연도말 조성액 | 6,858 | 6,015 | 5,982 | 5,558 | 5,246 | △6.5 |

※ 2017년도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이 폐지됨.

※ 2018년도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폐지됨.

당해연도 조성액은 평균적으로 7.9% 증가하였으나, 당해연도 사용액이 평균적으로 37.4% 증가하여 회계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6.5% 감소하였다.

< 기금운용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 전년도 이월 (사고 등) | 수 입 | 지 출 |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
|-------------|------------------|-----------|-----------|-----------------------|
| 합 계 | 315,000 | 5,779,997 | 6,094,997 | 0 |
| 양 성 평 등 기 금 | | 520,054 | 520,054 | |
| 자 활 기 금 | | 580,690 | 580,690 | |
| 식 품 진 흥 기 금 | | 127,939 | 127,939 | |
| 농 업 발 전 기 금 | | 3,315,672 | 3,315,672 | |
| 재 난 관 리 기 금 | 315,000 | 1,235,642 | 1,550,642 | |

검사결과 양성평등기금 등 5개 기금의 당해연도 현재액은 5,245,757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312,061천원이 감소한 것이다.

당해연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6,094,997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다.

6. 재무제표의 결산

2019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9 | | 2018 | | 전년 대비 증감(-) |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 액 | 비 율 |
| 자 산 | 1,824,539 | 100 | 1,764,906 | 100 | 59,633 | 3.38 |
| I. 유 동 자 산 | 150,622 | 8.26 | 162,981 | 9.23 | (12,359) | (7.58) |
| II. 투 자 자 산 | 3,273 | 0.18 | 7,119 | 0.40 | (3,846) | (54.02) |
| III. 일 반 유 형 자 산 | 123,435 | 6.77 | 112,263 | 6.36 | 11,172 | 9.95 |
| IV. 주 민 편 의 시 설 | 324,592 | 17.79 | 296,885 | 16.82 | 27,707 | 9.33 |
| V. 사 회 기 반 시 설 | 1,220,970 | 66.92 | 1,184,421 | 67.11 | 36,549 | 3.09 |
|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 1,647 | 0.09 | 1,237 | 0.07 | 410 | 33.14 |
| 부 채 | 32,298 | 100 | 32,115 | 100 | 183 | 0.57 |
| I. 유 동 부 채 | 4,818 | 14.92 | 4,038 | 12.57 | 780 | 19.32 |
|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 | | | |
|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 27,480 | 85.08 | 28,077 | 87.43 | (597) | (2.13) |
| 순 자 산 | 1,792,242 | 100 | 1,732,790 | 100 | 59,452 | 3.43 |
| I. 고 정 순 자 산 | 1,648,106 | 91.96 | 1,571,695 | 90.70 | 76,411 | 4.86 |
| II. 특 정 순 자 산 | 5,200 | 0.29 | 5,598 | 0.32 | (398) | (7.11) |
| III. 일 반 순 자 산 | 138,936 | 7.75 | 155,497 | 8.97 | (16,561) | (10.65) |

※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 일반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 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2019회계연도 말 단양군의 자산은 1조 8,245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의 1조 7,649억 600만원 보다 596억 3,300만원(3.38%)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사회 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일반유형자산 등 비유동 자산의 취득에 따른 것이다.

반면, 2019회계연도 말 단양군의 부채는 322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321억 1,500만원 보다 1억 8,300만원(0.57%) 증가하였는데, 유동부채가 전년대비 7억 8,000만원 증가한 48억 1,800만원이고, 기타비유동부채는 274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9,700만원 감소하였음. 기타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8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9 | 2018 | 전년 대비 증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I. 사업순원가 (가 - 나) | 123,080 | 107,389 | 15,691 | 14.61 |
| 가. 사업총원가 | 255,884 | 228,346 | 27,538 | 12.06 |
| 나. 사업수익 | 132,805 | 120,958 | 11,847 | 9.79 |
| II. 관리운영비 | 53,149 | 52,352 | 797 | 1.52 |
| III. 비배분비용 | 16,476 | 17,654 | (1,178) | (6.67) |
| IV. 비배분수익 | 13,552 | 11,476 | 2,076 | 18.09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179,153 | 165,919 | 13,234 | 7.98 |
| VI. 일반수익 | 237,662 | 214,675 | 22,987 | 10.71 |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 (58,510) | (48,756) | (9,754) | 20.01 |

단양군의 2019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2,558억 8,400만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328억 500만원을 차감한 1,230억 8,000만원 이다.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07억 8,800만원과 경비 23억 6,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7억 9,100만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비용 164억 7,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112억 4,600만원, 기타수익 23억 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 1,791억 5,300만원에서 일반수익 2,376억 6,200만원을 차감한 2019회계연도 단양군의 재정운영결과는 -585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의 -487억 5,600만원보다 97억 5,400원(20.01%) 감소하였다.

전기 대비로 살펴보면,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가 각각 156억 9,100만원, 7억 9,700만원 증가하고, 비배분비용은 11억 7,800만원 감소한 반면, 비배분수익은 20억 7,6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순원가는 전기 대비 132억 3,400만원(7.98%) 증가하였다. 일반수익은 전기 대비 229억 8,700만원(10.71%) 증가하였다.

7. 성과보고서

단양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단양군은 본 회계연도의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20개)-정책사업목표(8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8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4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 구 분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 | | |
|------------|-----------|-----------|------------|-----------------|------------|-----------|--------------|
| | | 개수 | 지표수(A) | 초과달성, 달성수(B) | 미달성 | 달성률(A/B) | |
| 계 | 20 | 81 | 244 | 21 | 201 | 22 | 90.98 |
| 정책기획담당관 | 1 | 3 | 11 | 1 | 10 | 0 | 100 |
| 자치행정과 | 1 | 5 | 14 | 0 | 8 | 6 | 57.14 |
| 관광정책과 | 1 | 3 | 10 | 4 | 6 | 0 | 100 |
| 주민복지과 | 1 | 6 | 16 | 0 | 16 | 0 | 100 |
| 민원과 | 1 | 3 | 32 | 5 | 26 | 1 | 96.88 |
| 문화체육과 | 1 | 7 | 16 | 2 | 14 | 0 | 100 |
| 재무과 | 1 | 2 | 7 | 0 | 7 | 0 | 100 |
| 지역경제과 | 1 | 4 | 4 | 2 | 0 | 2 | 50 |
| 환경과 | 1 | 3 | 11 | 1 | 9 | 1 | 90.91 |
| 농업축산과 | 1 | 6 | 23 | 0 | 23 | 0 | 100 |
| 산림녹지과 | 1 | 5 | 21 | 2 | 19 | 0 | 100 |
| 균형개발과 | 1 | 5 | 11 | 0 | 11 | 0 | 100 |
| 안전건설과 | 1 | 5 | 17 | 1 | 11 | 5 | 70.59 |
| 농업기술센터 | 1 | 3 | 7 | 0 | 6 | 1 | 85.71 |
| 보건위생과 | 1 | 5 | 13 | 0 | 11 | 2 | 84.62 |
| 건강증진과 | 1 | 4 | 13 | 1 | 12 | 0 | 100 |
| 단양군의회 | 1 | 1 | 1 | 0 | 0 | 1 | 0.00 |
| 상하수도사업소 | 1 | 4 | 6 | 0 | 5 | 1 | 83.33 |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1 | 4 | 8 | 2 | 4 | 2 | 75.00 |
| 농산물마케팅사업소 | 1 | 3 | 3 | 0 | 3 | 0 | 100 |

단양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담당관 등 10개 부서는 100%를 달성하고 대부분 부서가 70% 이상의 달성한 반면, 지역경제과 등 3개 부서는 70% 미만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이며 단양군 전체적으로 90.98% 달성 결과를 보였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에는 전년도 성과지표 달성률 64.98%보다 26%로 상향된 90.98%로 나타나 수치상으로는 괄목할만하게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부서는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에 대한 객관성·합리성 확보는 물론 난이도 있는 목표설정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단순하거나, 불합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8.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 현황

(단위: 천원)

| 회 계 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합 계 | 2,774,064 | 94,039 | 447,602 | 2,420,501 |
| 일반회계 | 2,774,064 | 94,039 | 447,602 | 2,420,501 |
| 기타특별회계 | 0 | 0 | 0 | 0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20,501천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무

채무 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전년도말 현재액 | 발생액 | 상환소멸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합 계 | 0 | 0 | 0 | 0 | 0 |
| 일반회계 | 0 | 0 | 0 | 0 | 0 |
| 특별회계 | 0 | 0 | 0 | 0 | 0 |
| 기 금 | 0 | 0 | 0 | 0 | 0 |

검사결과 단양군의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0원 해당연도 0원 발생하고 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0원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채무의 상환 예정액은 다음과 같다.

채무 상환 예정액

(단위 : 원)

| 구분 | 채무액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년 이후 |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 채무부담행위

2019. 12. 31. 현재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3) 공유재산

2019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 증 | 감 | | |
| 합 계 | 1,412,508,389 | 11,040,104 | 316,023 | 1,423,232,469 | |
| 행정재산 | 소 계 | 1,347,255,349 | 8,975,938 | 316,023 | 1,355,915,264 |
| | 공용재산 | 799,001,741 | 719,498 | 44,339 | 799,676,900 |
| | 공공용재산 | 531,032,962 | 8,256,441 | 268,284 | 539,021,119 |
| | 기업용재산 | 17,006,539 | | 3,400 | 17,003,139 |
| | 보존재산 | 214,106 | | | 214,106 |
| 일반재산 | 65,253,039 | 2,064,166 | | 67,317,205 | |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0,724,081천원이 증가한 1,423,232,469천원이다.

(4)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전년도말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취득 | 처분 | |
| 수 량 | 1,083 | 78 | 63 | 1,098 |
| 금 액 | 10,259,603 | 1,150,105 | 236,284 | 11,173,424 |

물품 수량은 전년도보다 15건이 증가하고, 금액은 913,821천원이 증가한 1,098건, 11,173,424천원이다. 증가사유는 미니버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노면청 소차, 쓰레기수거용트럭, 탱크트럭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이다.

9. 금고의 결산

2019년도말 총세입액은 552,319,330,030원이며, 세출액은 세입액의 75.3%인 416,030,223,410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회계별 / 구분 | 세 입 (A) | 세 출 (B) | 잔 액 (금고보관액) (A-B) | 비 고 |
|----------------|-----------------|-----------------|-------------------|-----|
| 합 계 | 552,319,330,030 | 416,030,223,410 | 136,289,106,620 | |
| 일반회계 | 505,371,015,760 | 391,130,506,580 | 114,240,509,180 | |
| 공기업특별회계 | 11,938,173,240 | 7,253,915,760 | 4,468,257,480 | |
| 수도사업특별회계 | 11,938,173,240 | 7,253,915,760 | 4,684,257,480 | |
| 기타 특별회계 | 35,010,141,030 | 17,645,801,070 | 17,364,339,960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164,512,800 | 157,671,720 | 6,841,080 | |
| 주차장특별회계 | 1,437,079,340 | 816,504,510 | 620,574,830 | |
|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 7,572,280,830 | 7,004,378,730 | 567,902,100 | |
| 수질개선특별회계 | 17,787,365,090 | 7,275,506,830 | 10,511,858,260 | |
|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 | 8,048,902,970 | 2,391,739,280 | 5,657,163,690 | |

III.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조서

- 검사대상 : 충청북도 단양군
- 검사기간 : 2020. 04. 03. ~ 04. 22.(20일간)

| | | |
|------|------|-----|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조성룡 |
| | 위원 | 김진태 |
| | 위원 | 박상용 |
| | 위원 | 임종만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 연번 | 분야 | 소관부서 | 개선 및 권고사항 |
|----|------|---------------|--------------------------------|
| 1 | 세입결산 | 재무과 | 지방세 세수추계 철저 |
| 2 | 세입결산 | 세외수입 부서 | 세외수입 세수추계 철저 |
| 3 | 세입결산 | 재무과 |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철저 |
| 4 | 세입결산 | 세외수입 부서 | 미수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
| 5 | 세입결산 | 재무과, 세외수입 부서 | 행정기관 착오 과오납금 개선 |
| 6 | 세입결산 | 재무과 |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 이행 |
| 7 | 세입결산 | 민원과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소홀 |
| 8 | 세입결산 | " |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서 작성 소홀 |
| 9 | 세입결산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결산기준일 통일 및 징수 권고 |
| 10 | 세입결산 | 특별회계, 기금운영 부서 | 특별회계 및 기금 재정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

| 연번 | 분야 | 소 관 부 서 | 개선 및 권고사항 |
|----|---------|--|----------------------------|
| 11 | 세출분야 | 관광정책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 세출예산 사업구조화 원칙 준수 |
| 12 | 세출분야 |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 부서별 집행잔액 최소화(1억이상) |
| 13 | 세출분야 | 관광정책과, 주민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예산 집행잔액 개선 |
| 14 | 세출분야 | 해당 부서 |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집행 철저 |
| 15 | 세출결산 | 농산물마케팅사업소 | 수요예측 정확성 향상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
| 16 | 세출결산 | 정책기획담당관 | 결산결과의 환류를 통한 집행률 제고 |
| 17 | 세출분야 | 자치행정과 |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협의회 운영 미흡 |
| 18 | 세출분야 | 자치행정과, 읍·면 | 이장 신원보증보험 관리 철저 |
| 19 | 세출분야 | 자치행정과 | 이장 자녀 장학금 예산운영 효율성 제고 |
| 20 | 세출결산 | 농업기술센터 | 보조금 지원사업(표지판 설치) 사후관리 철저 |
| 21 | 세출결산 | 상하수도사업소 |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과다 |
| 22 | 세입세출외현금 |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외현금 관리 개선 권고 |
| 23 | 성과보고서 | 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내실있는 성과목표 설정 및 추진으로 성과제고 |
| 24 | 기타 | 해당 부서 |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후속조치 결과 미흡 |
| 25 | 기타 | 관광정책과 | 단양관광관리공단 경영개선노력 강화 |
| 26 | 기타 | 관광정책과 | 양방산 전망대 관리 운용 소홀 |
| 27 | 기타 | 관광정책과 | 관광분야 관련 조례 정비 |
| 28 | 기타 |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 문화관광시설 수전시설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 |
| 29 | 기타 | 보건위생과 | 보건소 태양광 운영 개선 권고 |
| 30 | 기타 | 관광정책과, 단양관광관리공단 | 천동캠핑장 문제점 개선 권고 |

▷ 관련부서 : 재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 세목별 현황 <2019. 12. 31.기준>

(단위:천원)

| 세 목 | 세수추계액 (예산액) | 징수결정액 | 차 액 | 비 고 |
|-------|----------------|------------|-----------|-----|
| 합 계 | 17,522,901 | 18,973,649 | 1,450,748 | |
| 주 민 세 | 858,000 | 1,130,976 | 272,976 | |
| 재 산 세 | 2,518,901 | 3,029,505 | 510,604 | |
| 자동차세 | 6,771,000 | 6,664,502 | △106,498 | |
| 담배소비세 | 2,400,000 | 2,367,313 | △32,687 | |
| 지방소득세 | 4,865,000 | 4,710,258 | △154,742 | |
| 과년도수입 | 110,000 | 1,071,095 | 961,095 | |

- 지방세 세수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액이 17,52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8,974백만원 대비 1,451백만원을 적게 세수추계 하였습니다.
- 지방세 세수추계는 세수추이 및 경기변동 등을 활용한 추계변수를 적용하여 다음연도 세목별 수입을 예측하고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수추계 차액에 대하여는 추계변수(토지, 건축물, 차량거래 신장율 및 경제성장률, 기준가격 상승률 공시가격 등)에 우리 군 세입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세외수입 세목별 현황 <2019. 12. 31.기준>

(단위:천원)

| 구 분 | 예산액① | 징수결정액 ② | 차 액 (②-①) | 수납액③ | 미수납액 (②-③) |
|-------------|------------|------------|--------------|--------------------------|---------------|
| 합 계 | 17,572,808 | 26,111,829 | 8,539,021 | 23,890,707 결손 254,065 | 1,967,057 |
| 재산임대수입 | 1,291,840 | 1,767,480 | 445,640 | 1,689,016 | 78,464 |
| 사용료수입 | 8,988,529 | 8,250,691 | 737,838 | 8,232,058 | 18,633 |
| 수수료수입 | 621,312 | 710,253 | △88,941 | 704,525 | 5,728 |
| 사업수입 | 1,052,545 | 1,219,965 | 167,420 | 1,218,027 | 1,938 |
| 징수교부금 수입 | 410,000 | 431,750 | 21,750 | 431,750 | 0 |
| 이자수입 | 1,340,000 | 1,741,782 | 401,702 | 1,741,782 | 0 |
| 재산매각수입 | 31,000 | 7,634 | 23,366 | 7,634 | 0 |
| 부담금 | 700,500 | 713,282 | 12,782 | 713,282 | 0 |
| 과징금 및 과태료 | 69,221 | 235,423 | 166,202 | 151,984 | 83,439 |
| 기타수입 | 2,967,861 | 8,915,414 | 5,947,554 | 8,887,411 | 39,003 |
| 과년도수입 | 100,000 | 2,118,155 | 2,018,155 | 124,238 결손 254,065 | 1,739,852 |

-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수요에 충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 중 자체수입 확충원이며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의 근간입니다.
-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8,539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수추계 시 세입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재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 세목별 결산현황 <2019. 12. 31.기준>

(단위:천원)

| 구 분 | 예산액① | 징수결정액 ② | 실제수납액③ | 불납결손액 ④ | 미수납액 (②-③-④) |
|-------------|------------|------------|------------|------------|-----------------|
| 합 계 | 17,522,901 | 18,973,649 | 17,648,359 | 179,113 | 1,146,177 |
| 주 민 세 | 858,000 | 1,130,976 | 1,112,188 | 31 | 18,757 |
| 재 산 세 | 2,518,901 | 3,029,505 | 2,951,605 | 22 | 77,878 |
| 자 동 차 세 | 6,771,000 | 6,664,502 | 6,395,604 | 357 | 268,541 |
| 담 배 소 비 세 | 2,400,000 | 2,367,313 | 2,367,313 | | 0 |
| 지 방 소 득 세 | 4,865,000 | 4,710,258 | 4,585,374 | | 124,884 |
| 지 난 년 도 수 입 | 110,000 | 1,071,095 | 236,275 | 178,703 | 656,117 |

- 2019 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체납액)이 1,146백만원으로 체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6.04% 발생 하였으며
-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재산 및 예금조회, 압류, 공·경매, 관허사업 제한등 체납처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미수납액에 대한 요인별, 유형별로 분석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처분 실시 등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2019회계년도 미수세외수입금 및 대손충당금

(단위: 원)

| 구 분 | 금액(A) | 대손설정율(%) | 대손충당금(B) | 장부가액(A-B) |
|-----------|---------------|----------|-------------|---------------|
| 계 | 2,631,845,830 | 4.13% | 108,600,522 | 2,523,245,308 |
| 일반회계 | 2,088,521,370 | 4.42% | 92,303,870 | 1,996,217,500 |
| 기타특별회계 | 86,874,480 | 1.00% | 868,740 | 86,005,740 |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456,449,980 | 3.38% | 15,427,912 | 441,022,068 |

○ 최근 3년간 미수세외수입금 및 대손충당금 내역

(단위: 원)

| 구 분 | 2019 | | 2018 | | 2017 | |
|------------|---------------|----------|---------------|----------|---------------|----------|
| | 금액(A) | 대손설정율(%) | 금액(A) | 대손설정율(%) | 금액(A) | 대손설정율(%) |
| 미수재산임대료수익 | 98,169,600 | 1.0% | 21,160,540 | 1.0% | 16,287,620 | 2.6% |
| 미수사용료수익 | 499,709,170 | 3.2% | 661,518,210 | 0.4% | 532,752,410 | 0.5% |
| 미수수수수료수익 | 7,778,660 | 1.0% | 11,571,870 | 1.0% | 10,361,230 | 1.0% |
| 미수사업수익 | 1,872,100 | 1.0% | 1,755,700 | - | - | - |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 - | - | - | - | - | - |
| 미수부담금 | 18,360,000 | 0.0% | 10,039,210 | 0.5% | 1,148,000 | 0.0% |
| 미수변상금및위약금 | 36,439,720 | 1.0% | 29,383,840 | 1.0% | 29,069,610 | 1.0% |
| 미수채납처분수익 | - | - | - | - | - | - |
| 미수과태료 | 1,745,809,020 | 4.7% | 1,943,577,640 | 1.0% | 1,033,793,610 | 1.7% |
| 미수과징금 | 26,837,380 | 1.0% | 7,237,380 | 1.0% | 929,870,980 | 2.5% |
| 미수이자수익 | 116,917,250 | 1.0% | 120,240,900 | 1.0% | 140,821,880 | 1.0% |
| 미수이행강제금 | 29,726,470 | 24.1% | 56,939,920 | 1.0% | 11,499,800 | 1.0% |
|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 50,226,460 | 1.7% | 102,045,730 | 1.0% | 98,997,790 | 11.6% |
| 계 | 2,631,845,830 | 4.1% | 2,965,470,940 | 0.9% | 2,804,602,930 | 2.0% |

- 대손충당금은 세목별로 과년도와 현년도 구분하고 과거 결손처분 경험율을 고려하여 산정된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2019회계년도 미수세입금은 2,631,845천원으로 그 중 결손을 예상하는 대손충당금은 미수세입금의 4.13%인 108,601천원 입니다
- 미수세외수입금이 지난 3년간 263억 ~ 297억원 수준으로 장기 미수세외 수입금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대손설정율이 미수과태료(1.0%→ 4.7%) 미수이행강제금(1.0% → 24.1%)로 증가되어 이에 대한 회수방안이 필요 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압류 및 체납처분 조치를 하였음에도 실효성이 낮은 미수세외수입은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해당부서에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현황표 참조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 · 세외수입 과오납 현황(행정기관 착오)

(단위 : 원)

| 세목별 | 환급액 | 행정기관 착오 | | | | | |
|-------|-----------|-----------|-----------|-----------|-----------|---------|--------|
| | | 이 중 부 과 | 과세자료 착 오 | 과세표준 착 오 | 비과세/감면 착오 | 오 기 착 오 | |
| 합 계 | 5,362,500 | 277,570 | 1,888,820 | 1,659,840 | 1,134,310 | 64,710 | |
| 지방세 | 소 계 | 5,025,250 | | | | | |
| | 주민세 | 349,810 | | 349,810 | | | |
| | 재산세 | 1,739,260 | 39,060 | 694,760 | 546,970 | 458,380 | 90 |
| | 자동차세 | 138,280 | | | | 138,280 | |
| | 과년도수입 | 2,797,900 | 238,510 | 1,194,060 | 763,060 | 537,650 | 64,620 |
| 세외 수입 | 소 계 | 337,250 | 26,000 | 311,250 | | | |
| | 입장료수입 | 2,000 | 2,000 | | | | |
| | 기타사용료 | 24,000 | 24,000 | | | | |
| | 증지수입 | 700 | | 700 | | | |
| | 기타이자수입 | 190,000 | | 190,000 | | | |
| | 그외수입 | 120,550 | | 120,550 | | | |

- 행정기관 착오(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과세표준 착오, 비과세/감면 착오 오기착오)로 발생한 환급액이 5,363천원입니다
- 이에 따른 행정기관 불신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착오에 대한 발생사유를 코드별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시고, 발생 원인별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환급실시로 민원발생에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재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 체납자 현황(5천만 원 이상)

(단위: 원)

| 세 목 | 체납금액 | 납세자 | 압류 여부 | 압 류 내 용 | 비고 |
|-------|-------------|-------|-------|----------------|----|
| 계 | 198,088,440 | | | | |
| 등록면허세 | 71,476,250 | 황 * * | 여 | - 2017년 등록면허세 | |
| 지방소득세 | 126,612,190 | 김 * * | 여 | - 2018귀속 양도소득세 | |

-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황** 외 1명 198백만원입니다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1호에 의하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체납자 황 * *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1호의(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결손처분을 하기 바라며
- 체납자 김**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민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과태료 부과

(단위: 천원)

| 구분 | 2018년 | | | | 2019년 | | | |
|----------|--------|--------|--------|--------|--------|--------|--------|--------|
| | 부과 | 징수 | 미납 | 징수율 | 부과 | 징수 | 미납 | 징수율 |
| 자동차법 위반 | 46,170 | 27,550 | 18,620 | 59.67% | 45,180 | 26,380 | 18,800 | 58.39% |
| 손해배상법 위반 | 38,345 | 15,039 | 23,306 | 39.22% | 47,105 | 22,414 | 24,691 | 47.58% |
| 주정차 위반 | 17,686 | 14,467 | 23,306 | 81.80% | 12,572 | 10,010 | 24,691 | 79.62% |

- 체납액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합계 | | 2017이전 | | 2018년 | | 2019년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7,547 | 1,646,701 | 6,865 | 1,552,021 | 406 | 48,387 | 276 | 46,293 |
| 자동차 과태료 | 6,301 | 1,566,321 | 5,746 | 1,477,734 | 337 | 44,885 | 218 | 43,702 |
| 주정차 과태료 | 1,246 | 80,380 | 1,119 | 74,287 | 69 | 3,502 | 58 | 2,591 |

-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징수의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47%~60% 정도로 저조하여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어 총금액 16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자동차법 위반으로 매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하여 부과도 중요하지만 당해연도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자동차 등록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체납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감한 결손처리와 적극적인 변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운영하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내부거래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회계구분 | 예산과목 | 사업명 | 경정액 | 기정액 | 증감액 | 비고 |
|----|----------|---------|-----|-----------|-----------|----------|-------|
| 세출 | 일반회계 | 기타회계전출금 | 합계 | 4,495,798 | 4,276,310 | △219,488 | 3회 추경 |
| 세입 | 수질개선특별회계 | 기타회계전입금 | | | | | |

-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세입과목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 | 미수납액 |
|---------|-----------|-----------|-----------|---------|-----------|---------|
| | | | 수납총액 | 환급액 | 실제수납액 | |
| 기타회계전입금 | 4,276,310 | 4,495,798 | 4,495,798 | 219,488 | 4,276,310 | 219,488 |

▷ 개선 및 권고사항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금액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보는 과정입니다.
- 따라서 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환급) 및 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오납금이 관련된 징수결정액을 정리하였어야 하나

- 위의 현황과 같이 수질개선특별회계와 관련된 과오납금(219,488천원)을 처리하면서 징수결정액을 정리하지 않아 미수납금(219,488천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결산상 혼란을 주고 있어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권고 합니다.

▷ 관련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상수도 사용료 수입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2019년 예산액 | 징수결정 (A) | 수납액 (B) | 미수금 (C=A-B) | 미수금율 (%) | 비고 |
|-----|--------------|-------------|------------|----------------|-------------|--------------|
| 계 | 4,769,136 | 5,353,963 | 4,969,789 | 384,174 | 7.2 | 급수인구: 22,68 |
| 가정용 | 1,343,280 | 1,310,036 | 1,243,891 | 70,145 | 5.4 | 급수전수: 7,880 |
| 일반용 | 3,379,200 | 3,868,141 | 3,544,330 | 323,811 | 8.4 | 유수율(%): 79.3 |
| 대중탕 | 46,656 | 171,786 | 181,568 | △9,782 | | |

| 구분 | 2018년 예산액 | 징수결정 (A) | 수납액 (B) | 미수금 (C=A-B) | 미수금율 (%) | 비고 |
|-----|--------------|-------------|------------|----------------|-------------|--------------|
| 계 | 4,361,350 | 4,439,737 | 3,959,939 | 479,798 | 10.8 | 급수인구: 22,347 |
| 가정용 | 1,128,600 | 1,225,354 | 1,084,563 | 140,791 | 11.5 | 급수전수: 7,581 |
| 일반용 | 3,195,000 | 3,176,654 | 2,841,274 | 335,380 | 10.6 | 유수율(%): 80.5 |
| 대중탕 | 37,750 | 37,729 | 34,102 | 3,627 | 9.6 | |

| 구분 | 2017년 예산액 | 징수결정 (A) | 수납액 (B) | 미수금 (C=A-B) | 미수금율 (%) | 비고 |
|-----|--------------|-------------|------------|----------------|-------------|--------------|
| 계 | 3,511,137 | 4,029,617 | 3,583,682 | 445,935 | 11.1 | 급수인구: 23,156 |
| 가정용 | 958,452 | 1,070,983 | 940,943 | 130,040 | 12.1 | 급수전수: 7,409 |
| 일반용 | 2,517,512 | 2,924,854 | 2,618,160 | 306,695 | 10.5 | 유수율(%): 80.5 |
| 대중탕 | 35,173 | 33,780 | 24,579 | 9,200 | 27.2 | |

-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결정 후 수납하면서 미수금율이 2017년과 2018년은 11.1%와 10.8%였고 2019년은 7.2%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7년, 2018년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였고, 2019년은 다음연도 1월 20일 기준으로 결산이 이루어졌고
- 이에 따라 2019년 대중탕용 상수도사용료를 부과하면서 171,785,860원을 징수결정하고 181,567,970원을 수납하여 9,782,110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사용료 징수 및 수납액 관리 미흡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 및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따르면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는 12월 31일이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입·지출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출납사무를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결산 기준일을 매년 통일시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 관련부서 : 해당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특별회계 재정자금운용 현황 <2019. 12. 31.기준>

(단위: 백만원)

| 회 계 명 | 부서명 | 합계 | 보통 예금 | 기업 예금 | 정기 예금 | 공금예금 평균잔액 | 비고 |
|--------------------|---------------|--------|----------|----------|----------|--------------|----|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주 민 복지과 | 7 | 7 | | | 53 | |
| 주차장특별회계 | 민원과 | 620 | 620 | | | 301 | |
|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특별회계 | 지 역 경제과 | 568 | 68 | | 500 | 1,956 | |
| 수질개선특별회계 | 상하수도 사 업 소 | 10,512 | 3,412 | 100 | 7,000 | 2,965 | |
|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 군 형 개발과 | 5,657 | 557 | | 5,100 | 1,264 | |
| 수도사업특별회계 | 상하수도 사 업 소 | 4,684 | 684 | | 4,000 | 1,949 | |

○ 기금 재정자금운용 현황 <2019. 12. 31.기준>

(단위: 백만원)

| 기 금 명 | 조성액 | 사용액 | 기금보관 | | | | 비고 |
|--------|-------|-----|-------|-----|-------|------|----|
| | | | 합계 | 예탁금 | 정기예금 | 보통예금 | |
| 계 | 6,095 | 849 | 5,246 | | 4,945 | 301 | |
| 양성평등기금 | 520 | 13 | 506 | | 505 | 1 | |
| 자활기금 | 581 | 25 | 556 | | 555 | 1 | |
| 식품진흥기금 | 128 | - | 128 | | 69 | 59 | |
| 농업발전기금 | 3,316 | - | 3,316 | | 3,316 | 0 | |
| 재난관리기금 | 1,550 | 811 | 740 | | 500 | 240 | |

※ 예탁금: 기업자유예금 등 수시입출금식 예탁을 포함

- 재정자금 운용은 자금의 수납, 지급 및 유동성 관리,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자금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 단양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자금운용)에 의거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으며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특별회계 자금운용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3,412백만원외 5건 5,348백만원과 기금 자금운영은 재난관리기금 240백만원외 4건 301백만원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자금운용의 흐름과 이자율을 파악하여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예치관리 및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현황 표 참조

▷ 현황 및 문제점

○ 예산현액 현황

- 예산현액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현액 | | |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
|---------------|----------------|-----|------------|------------|------------|-----------|-------------|-----------|
| | | | 계 | 편성액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 |
| 합 계 | | | 51,691,926 | 34,650,480 | 14,316,183 | 2,725,263 | 14,561,852 | 1,624,323 |
| 관 광 정책과 | 관광자원 개발사업 | 시설비 | 9,485,673 | 2,600,000 | 4,500,000 | 2,385,673 | 3,665,478 | 112,830 |
| 균 형 개발과 |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 시설비 | 7,394,945 | 5,430,000 | 1,903,155 | 61,790 | 1,155,814 | 678,482 |
|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시설비 | 9,281,161 | 6,963,000 | 2,318,161 | 0 | 757,190 | 41,050 |
| 안 전 건설과 | 군도건설사업 | 시설비 | 5,800,653 | 2,980,000 | 2,677,753 | 142,900 | 1,336,000 | 142,055 |
| |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 시설비 | 14,827,855 | 13,314,000 | 1,513,855 | 0 | 6,100,000 | 398,405 |
| 상하수도 사 업 소 |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 시설비 | 4,901,639 | 3,363,480 | 1,403,259 | 134,900 | 1,547,370 | 251,501 |

- 예산편성액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통계목 | 부기명 | 예산액 |
|------------|----------------------------------|------------|--------------|-----|-------------------|-----------|
| 관 광 정책과 |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자원 개발 | 관광자원 개발사업 | 시설비 | 소 계 | 2,600,000 |
| | | | | | 단양강 잔도 시설물 보강사업 | 200,000 |
| | | | | | 양백폭포 시설물 정비사업 | 100,000 |
| | | | | | 도담리 옛나루터 정비사업 | 100,000 |
| | | | | | 관광자원개발 확충사업 | 100,000 |
| | | | | |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매입비 | 100,000 |
| | | | | |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 200,000 |
| | | | | |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설계비 | 100,000 |
| | | | | | 수양개 생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 50,000 |

| 부서명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통계목 | 부기명 | 예산액 |
|-----------|--------------|--------------|--------------------|-----|---------------------------------|-----------|
| | | | | | 선암골 생태유람길 시설물 정비공사 | 50,000 |
| | | | | | 만천하 장애인시설 확충공사 | 600,000 |
| | | | | | 만천하슬라이더 착륙장 및 안전시설 보강공사 | 310,000 |
| | | | | | 죽령옛길 연결로 조성사업 | 40,000 |
| | | | | | 사인암 관광지 명소화 사업 | 150,000 |
| | | | | | 첼린지 탐험학교 운동장 정비공사 | 200,000 |
| | | | | |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 300,000 |
| 균형 개발과 | 도시개발 | 도시계획 시설확충 | 도시계획 시설 정비사업 | 시설비 | 소 계 | 5,430,000 |
| | | | | | 우덕교 정비공사 | 2,500,000 |
| | | | | | 매포읍 도시계획도로(3-83) 개설사업 | 300,000 |
| | | | | | 매포시장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 | 500,000 |
| | | | | | 매포읍 평동리 주차장 조성사업 | 200,000 |
| | | | | | 별곡리 도시환경 정비사업 | 300,000 |
| | | | | | 단양읍 도시계획도로(중로37) 개설사업 | 300,000 |
| | | | | | 단양읍 장미터널 수해복구사업 | 1,000,000 |
| | | | | | 도전리 도로환경 개선사업 설계비 | 50,000 |
| | | | | | 당동리 소공원 정비사업 설계비 | 50,000 |
| | | | | |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 50,000 |
| | | | | | 가평리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 | 30,000 |
| | | | | |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 150,000 |
| 균형 개발과 | 현안사업 | 현안사업 관리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 시설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의 141건 | 6,963,000 |
| 안전 건설과 | 지방도로 건설사업 | 도로시설 관리 | 군도건설 사업 | 시설비 | 소 계 | 2,980,000 |
| | | | | | 의풍리 군도 수해복구공사 | 200,000 |
| | | | | | 기동리, 애곡리, 덕문곡리 도 로 수해복구공사 | 150,000 |
| | | | | | 의풍리 군도 확포장공사 | 300,000 |
| | | | | | 삼곡-파랑 군도 확포장공사 | 300,000 |
| | | | | | 방곡-직티 군도1호선 노면정 비 및 배수로 정비공사 | 300,000 |
| | | | | | 영춘 하리(갈매기) 농어촌도로정비 | 30,000 |

| 부서명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통계목 | 부기명 | 예산액 |
|-----|------|------|------------------|---------|------------------------------------|------------|
| | | | | | 상진 국도변 주차장 조성사업 | 500,000 |
| | | | |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 100,000 |
| | | | | | 당동리 철도 통로박스 확장사업 설계비 | 50,000 |
| | | | | | 덕문곡도로 선형개량사업 | 300,000 |
| | | | | | 각기삼거리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사업 | 700,000 |
| | | | | | 사평2리(아평) 선형개량사업 설계비 | 50,000 |
| | | | | | 소 계 | 13,314,000 |
| | | |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 시설비 | 별천리(내궁기) 농어촌도로 선 형개량사업 | 200,000 |
| | | | | | 별천리(내궁기) 농어촌도로 덧 띄우기공사 | 100,000 |
| | | | | | 덕촌 농어촌도로(211호선) 덧 띄우기공사 | 200,000 |
| | | | | | 장현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연결사업 | 100,000 |
| | | | | | 최가동 농어촌도로(102호선) 미끄럼방지 및 덧띄우기공사 | 200,000 |
| | | | | | 보발리 덕평,곰절 아스콘 덧 띄우기공사 | 152,000 |
| | | | | | 심곡리 농어촌도로(203호선) 확포장사업 | 700,000 |
| | | | | | 여천-상괴 농어촌도로(101호 선) 정비사업 | 200,000 |
| | | | | | 적성 애곡리 안전시설 설치공사 | 100,000 |
| | | | | | 만종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100,000 |
| | | | | | 화전민촌 농어촌도로 덧띄우기공사 | 100,000 |
| | | | | | 방곡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 1,800,000 |
| | | | | | 사평리(두산)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 2,600,000 |
| | | | | | 하진삼거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 4,000,000 |
| | | | | | 용진리 도로 정비공사 | 60,000 |
| | | | | | 장발2리 농어촌도로(206호선) 덧띄우기공사 | 40,000 |
| | | | | | 애곡리 농어촌도로(201호선) 확포장공사 | 300,000 |
| | | | | | 하방리 농어촌도로(302호선) 선형개량공사 | 380,000 |
| | | | | | 장발2리 농어촌도로(211호선) 덧띄우기공사 | 48,000 |
| | | | | | 하원곡~파랑도로 덧띄우기 공사 | 200,000 |
| | | | 별천리 농어촌도로(202호선) | 150,000 | | |

| 부서명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통계목 | 부기명 | 예산액 |
|--------------------|--------------------|-------------------------|---------------|-----|----------------------------|-----------|
| | | | | | 배수로 정비공사 | |
| | | | | | 대잠리 위험도로 정비공사 | 200,000 |
| | | | | | 상진리 국도 교차로 개선공사 | 1,234,000 |
| | | | | | 소백산자연휴양림 탐방로 조성공사 설계비 | 150,000 |
| | | | | | 소 계 | 3,363,480 |
| 상하수도 사업소 | 맑은 물 생산 및 공급 | 마을상수도 시설물 확충 및 유지 |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 시설비 |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장치 설치사업 | 100,000 |
| | | | | |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 | 100,000 |
| | | | | |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 | 400,000 |
| | | | | | 임현3리 관로 매설공사 | 350,000 |
| | | | | | 별천리 산안 지하수 개발 및 배수관로 공사 | 115,000 |
| | | | | | 양당리 절골 지하수 개발 및 관로매설 공사 | 60,000 |
| | | | | | 연곡1리 텃골 지하수개발 및 배수관로 공사 | 115,000 |
| | | | | | 연곡3리 텃씨우기 공사 | 200,000 |
| | | | | | 덕문곡 1,2리 텃씨우기 공사 | 270,000 |
| | | | | | 단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 302,600 |
| | | | | | 적성면 하2리 노가동 수도시 설 개량공사 | 200,000 |
| | | | | | 천동리 송수관로 매설공사 | 650,000 |
| | | | | | 영춘교 관매달기 이설공사 | 250,000 |
| | | | | | 하시리 관로이설공사 | 50,000 |
| | | | | | 노동리 곰말배수지 이설공사 | 20,000 |
| | | | | | 단성 통합배수지 감압변 설치공사 | 100,000 |
| 천동리 지방상수도 배수지 토지매입 | 40,000 | | | | | |

- 위의 예산편성액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자원개발사업에는 15개 사업 2,600,000천원,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12개 사업 5,430,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42개 사업 6,963,000천원, 군도건설사업은 12개 사업 2,980,000천원, 농어촌도로건설사업은 24개 사업 13,314,000천원,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17개 사업 3,324,760천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 이월예산액은 관광자원개발사업은 6,885,673천원,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1,964,945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318,161천원, 군도건설사업은 2,820,653천원, 농어촌도로건설사업은 1,513,855천원, 마을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은 1,538,159천원입니다.
- 사업별 예산제도에서의 정책사업은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한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이고 단위사업은 정책사업을 세분한 실행단위이며, 세부사업은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 정의되고 있는 바, 상기 부서에서는 1개의 세부사업에 다수의 특정 사업유형을 포함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9. 7. 1. 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및 별표 10에 따르면 부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구조화를 하고 특정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은 별도로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9. 5. 28. 행정안전부훈령 제75호)의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추경예산편성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부서의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구조화를 개선하고 특정의 사업유형이 1개의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관련부서 : 현황표 참조

▷ 현황 및 문제점

○ 부서별 집행잔액 (일반회계 1억 원 이상)

(단위:백만원)

| 부서명 | 부문 | 세부사업 | 통계목 | 예산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율 |
|----------|---------|----------------|----------|--------|--------|--------|-------|--------|
| 합 계 | | | | 44,010 | 27,833 | 14,006 | 2,171 | 4.93% |
| 관 광 정책과 | 관광 | 관광자원개발사업 | 시설비 | 9,486 | 5,707 | 3,665 | 114 | 1.20% |
| 문 화 체 육과 | 문화재 | 문화재 보수정비 | 시설비 | 386 | 216 | 34 | 136 | 35.30% |
| 지 역 경 제과 | 노동 | 청년창업공간운영 | 민간경상사업보조 | 212 | 42 | 22 | 148 | 69.81% |
| 군 형 개 발과 | 지역및도시 |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 | 시설비 | 7,395 | 5,561 | 1,156 | 678 | 9.17% |
| 군 형 개 발과 | 농업·농촌 |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 | 시설비 | 1,000 | 552 | 146 | 302 | 30.17% |
| 안 전 건설과 | 도로 | 군도건설사업 | 시설비 | 5,801 | 4,323 | 1,336 | 142 | 2.45% |
| 안 전 건설과 | 도로 |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 시설비 | 14,828 | 8,329 | 6,100 | 399 | 2.69% |
| 상하수도 사업소 | 상하수도·수질 |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 시설비 | 4,902 | 3,103 | 1,547 | 252 | 5.13% |

○ 부서별 집행잔액 (특별회계 1억 원 이상)

(단위:백만원)

| 부서명 | 부문 | 세부사업 | 통계목 | 예산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율 |
|----------|---------|------------------|-----|-------|-------|-------|------|--------|
| 합 계 | | | | 5,447 | 2,325 | 2,347 | 775 | 14.23% |
| 상하수도 사업소 | 상하수도·수질 | 환경기초 시설운영 관리 | 시설비 | 2,071 | 1,396 | 336 | 339 | 16.38% |
| 상하수도 사업소 | 상하수도·수질 | 한강수계 단양지오컬쳐 조성사업 | 시설비 | 3,376 | 929 | 2,011 | 436 | 12.93% |

-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 당초 사업수립시 사전 수요파악과 타당성, 적법성을 판단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사업시기 등으로 다음연도 이월하고도 집행잔액 1억원이상 일반회계 2,171백만원, 특별회계 775백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시 각 해당부서 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을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현황표 참조

▷ 현황 및 문제점

-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 부서별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비고 |
|---------|-----------|-----------|---------|----|
| 계 | 3,235,511 | 2,925,473 | 310,038 | |
| 관광정책과 | 545,401 | 537,623 | 8,078 | |
| 주민복지과 | 1,144,066 | 915,472 | 228,594 | |
| 지역경제과 | 258,900 | 248,463 | 10,437 | |
| 환경과 | 38,847 | 11,440 | 27,407 | |
| 안전건설과 | 89,053 | 59,550 | 29,503 | |
| 상하수도사업소 | 6,000 | 1,452 | 4,548 | |

- 위의 반환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235,511천원을 예산반영 하였으나 2,925,473천원을 지출하고 예산대비 10%정도인 310,03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여 가용재원을 사장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민복지과에서는 228,59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5개 부서에서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국비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정확한 예산반영 및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하고
- 상급기관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보조금 반환금이 적기에 반납되어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 관련부서 :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비 전액 반환 사업현황

(단위: 건, 천원)

| 구 분 | 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건 수 | 84 | 30 | 33 | 21 |
| 반환금액 | 1,685,694 | 142,036 | 1,428,881 | 114,777 |

※ 세부내역 첨부

- 보조금 확보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하나 보조사업비 집행없이 전액 반납하는 사업이 최근 3년동안 84건 1,686백만원의 반환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사업에 따른 준비부담금도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선정 및 신청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현실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겠지만 매칭 사업비의 비율을 설정하는데 일선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집행시 사업자로 선정되었지만 포기하는 자는 추후 선정 배제 등 불이익 처분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관련부서 : 농산물마케팅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명 | 사업계획 | 추진실적 | 예산액 | 집행액 | 불용액 | 미집행율 |
|---------------------------|-------------------|-------------------|---------|---------|---------|-------|
| 합계 | | | 311,000 | 200,855 | 110,145 | 35.4% |
| 읍면 자매결연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 추진 | 8개 읍면 | 3개 읍면 | 20,000 | 2,905 | 17,095 | 85.4% |
| 농산물 택배비 지원 | 571농가 122,018건 | 468농가 100,263건 | 291,000 | 197,950 | 93,050 | 32.0% |

▷ 개선 및 권고사항

- 위의 현황에서와 같이 ‘단양고추 가공 및 유통판매 활성화 인건비 지원’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 ‘읍면 자매결연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 추진’ 사업은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단양읍 외 2개 읍면을 제외한 5개 읍면에서 자매결연처의 직거래장터 설치 여건 미비와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아로니아 재배농가의 타작물 전환추세의 증가 등으로 예상이 가능했던 대상 농가 및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인해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업비가 당초예산에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대상 사업의 달성여건의 변화또는 생산기반시설의 감소 추세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차이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감액 조정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 관련부서 : 정책기획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소송지원관련 예산집행현황(2017~2019)

(단위 : 천원, %)

| 소송지원 및 법률상담 | | 201-01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수당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변호사 수당 <u>소송수입(변호)료</u> | 201-02 공공운영비 <u>소송공탁금 및 제세</u> | 305-01 배상금등 <u>소액배상금</u> |
|-------------|------|---|---------------------------------------|-----------------------------|
| 2017년 | 예산액 | 89,100 | 18,500 | 12,000 |
| | 집행액 | 82,300 | 15,460 | 11,372 |
| | 집행잔액 | 6,800 | 3,040 | 628 |
| | 집행률 | 92.3 | 83.5 | 94.7 |
| 2018년 | 예산액 | 159,600 | 10,000 | 50,000 |
| | 집행액 | 74,080 | 999 | 14,448 |
| | 집행잔액 | 85,520 | 9,001 | 35,552 |
| | 집행률 | 46.4 | 9.9 | 28.8 |
| 2019년 | 예산액 | 160,800 | 35,000 | 70,000 |
| | 집행액 | 79,272 | 2,924 | 992 |
| | 집행잔액 | 81,528 | 32,076 | 59,008 |
| | 집행률 | 49.2 | 8.4 | 1.4 |

▷ 개선 및 권고사항

- 위 현황에서와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송지원경비를 분석한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정확한 소요예산의 추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 소송수입(변호)료를 포함한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3년 평균 78,551천원이

집행(평균 집행율 62.6%)되었으나, 예산액은 2017년 89,100천원에서 2019년 160,800천원으로 증가(증가율 80.5%, 집행율 49.2%)한 것으로 집계되고

- 소송공탁금 및 제세의 경우에도 2017년 집행액(15,460천원)보다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의 집행액(2,924천원) 역시 감소하였으나 예산액은 2017년 대비 35,000천원으로 증가(증가율 89%, 집행율 8.4%)하였으며
- 소액배상비 역시 2018년 14,448천원을 집행하여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9도에는 다시 992천원으로 급감한데 비하여 예산액은 70,000천원으로 증가(증가율 14%, 집행률 1.4%)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모든 사업, 특히 매년 반복되는 유사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실시되는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율을 제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현황 및 문제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2017 | | 2018 | | 2019 | | 비 고 |
|-------------------------|------|-----|------|-----|------|-----|-----|
|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
| 북한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 300 | 0 | 420 | 0 | 420 | 0 | |

○ 협의회 개최실적: 없음

-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설립된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협의회는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과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협의회로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으며,
- 이와 관련한 북한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참석 수당을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성립 후 집행한 실적이 없고
-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협의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나 위촉직 5명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20일 위촉하여 2020년 1월 19일 2년간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을 하지 않는 등 협의회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협의회를 정비하여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라며,
- 예산의 필요성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부득이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각 읍면

▷ 현황 및 문제점

- 이장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양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제2조(신원보증) ① 읍장·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읍.면장은 이장의 보증보험 가입액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가곡면과 어상천면에서는 이장 신원보증 보험료를 집행하지 않고 2019회계연도 예산을 전액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고,
- 또한 읍장·면장은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곡면에서는 이장 개인이 면에 제출하는 방식의 관행을 2020년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으며
- 대강면에서는 보증보험기간이 도래 되었음에도 보험을 재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이장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 책임을 위한 이장 신원보증을 「단양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고
- 읍면마다 다른 보증보험기간을 통일하여 시행할 수 방법 등 전반적인 개선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 현황 및 문제점

- 장기근속 이장의 사기양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은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장학생의 선발)에는 매년 처음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 장학금을 지급 후 집행잔액을 추경 예산을 통해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아래 표와 같이 장학금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에 삭감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 회계연도 | 예산액(원) | 지출현황 | | 집행잔액 | 비고 |
|------|-----------|---------|-----------|-----------|------|
| | | 지급인원(명) | 지급액(원) | | |
| 2019 | 5,000,000 | | 0 | 5,000,000 | |
| 2018 | 5,000,000 | 1 | 235,200 | 4,764,800 | 고등학생 |
| 2017 | 5,000,000 | 3 | 3,600,000 | 1,400,000 | 대학생 |
| 2016 | 5,000,000 | | 0 | 5,000,000 | |
| 2015 | 5,000,000 | 1 | 1,200,000 | 3,800,000 | 대학생 |

▷ 개선 및 권고사항

-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장학금을 지출한 후 집행잔액은 추경에 삭감하여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 관련부서 : 농업기술센터

▷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사업 현황

| | | |
|----------|------------------------------|--|
| 사업명 | 농촌어르신복지실천시범사업 | 농업인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
| 사업비(보조금) | 50,000천원 | 50,000천원 |
| 사업기간 | 2019.1. ~ 12. | 2019.1. ~ 12. |
| 사업내용 | 용진리 마을보유기술 및 숨씨 활용 가공시설지원 | 농산품 가공·생산·상품 화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 사업 |
| 보조사업자 | 용진리 마을 | 적성 소야 (대표) 운영석 |

▷ 개선 및 권고사항

- 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단양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 현황의 보조사업시설은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시설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권고하오니 조속히 표지판을 설치하여 동 사업이 보조금 지원 시설임을 명확히 하여 사업운영의 활성화와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련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
|--------|---------------|------------|-----------|-----|-----------|----|
| 합 계(A) | | 12,424,912 | 7,253,916 | 0 | 5,170,996 | |
| 사업예산 | 소 계 | 6,817,176 | 4,401,954 | 0 | 2,415,222 | |
| | 영 업 비 용 | 4,505,589 | 4,401,954 | 0 | 103,635 | |
| | 예 비 비 (B) | 2,311,587 | 0 | 0 | 2,311,587 | |
| 자본예산 | 소 계 | 5,607,736 | 2,851,962 | 0 | 2,755,774 | |
| | 유형자산취득 | 2,358,714 | 2,347,962 | 0 | 10,752 | |
| |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 504,000 | 504,000 | 0 | 0 | |
| | 예 비 비 (C) | 2,745,022 | 0 | 0 | 2,745,022 | |

※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비율[(B+C)/A] : 40.69%

(전체 집행잔액 대비 97.76%)

○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현황

(단위 : 천원, %)

| 사 업 구 분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
|--------------|------------|-----------|-----------|-----------|----|
| 합 계(A) | 17,542,841 | 7,275,507 | 7,557,616 | 2,709,718 | |
| 정 책 사 업 비 | 15,500,700 | 6,942,830 | 7,557,616 | 1,000,254 | |
| 내부거래지출 및 반환금 | 334,382 | 332,677 | 0 | 1,705 | |
| 예 비 비 (B) | 1,707,759 | 0 | 0 | 1,707,759 | |

※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비율[B/A] : 9.73%

(전체 집행잔액 대비 63.02%)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의 규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예비비의 계상을 생략할 수도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현황과 같이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합산하여 예산현액의 40.69%인 5,056,609천원이고(전체 집행잔액의 97.78%),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현액의 9.73%인 1,707,759천원으로(전체 집행잔액의 63.02%)입니다. 한편, 2개의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의 사용은 2018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사용한 20,000천원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비비 편성시 연도별 집행실적과 시설운영 평가시 권고하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반영함과 동시에 긴급한 수요에도 대비하는 한편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줄임으로써 단양군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개선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 관련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외현금 현황

(단위: 원)

| 구분 | 전기이월액(1) | 당기수입액(2) | 당기지출액(3) | 기말잔액(1+2-3) | 비고 |
|-------|------------|---------------|---------------|-------------|--------------|
| 2017년 | 36,411,050 | 19,584,984 | 36,411,050 | 19,584,984 | |
| 2018년 | 19,584,984 | 85,677,079 | 19,584,984 | 85,677,079 | |
| 2019년 | 1,098,904 | 2,003,099,090 | 2,002,000,190 | 4 | 결산서상 자료 |
| | 85,677,079 | 2,002,000,190 | 2,087,677,265 | 4 | 수정되어야할 결산 |

- 2019년 전기이월액은 2018년 기말잔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 2019년도 정확한 수입·지출외현금 현황은 전기이월액 85,677,079원, 당기수입액 2,002,000,190원, 당기지출액 2,087,677,265원이고 기말잔액은 4원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지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현황표 참조

▷ 현황 및 문제점

-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및 성과달성도 총괄

(단위: 개)

| 구 분 | 전 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 성과달성도 | | | | 비고 |
|----------------|------------|--------|-----|-------|-----|-----|-------|----|
| | | 개수 | 지표수 | 초과달성 | 달성 | 미달성 | 미달성률 | |
| 2017년 | 17 | 76 | 225 | 22 | 160 | 43 | 19.1% | |
| 2018년 | 17 | 75 | 214 | 11 | 128 | 75 | 35.0% | |
| 2019년 | 19 | 80 | 243 | 21 | 201 | 21 | 8.6% | |
| 자치행정과 | 1 | 5 | 14 | 0 | 8 | 6 | 42.8% | |
| 안전건설과 | 1 | 5 | 17 | 1 | 11 | 5 | 29.4% | |
|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 1 | 4 | 8 | 2 | 4 | 2 | 25.0% | |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환류하여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 2019년도 위 현황과 같이 총 80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정하고 추진한 후 그 성과를 243개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지표수의 달성도는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부서별로 목표미달인 지표수가 25% 이상인 부서도 3개 부서가 있어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서는 정책사업에 대한 적절한 목표 설정은 물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좀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 성과를 높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 관련부서 : 현황표 참조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을 확인결과 「**조치결과 완료**」라고 하였지만 다음 표에서 보듯 최근 3년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회계년도 | | | 관련부서 |
|-----------------|------|------|------|---------------------------------|
| | 2016 | 2017 | 2018 | |
| 국도비보조사업 자금미교부집행 | 2016 | 2017 | 2018 | 농업축산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
| 성과보고서 미흡 | | 2017 | 2018 | 정책기획담당관.전부서 |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 2017 | 2018 | 재무과 |
| 순세계 잉여금 과다 | 2016 | 2017 | 2018 | 전부서 |
| 예비비 집행 부적절 | 2016 | 2017 | 2018 | 농업축산과,균형개발과 |
| 예산전용,변경 부적정 | | 2017 | 2018 | 정책기획담당관, 농업축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매포읍 |
| 예산편성 부적절(과다편성) | 2016 | | 2018 | 정책기획담당관,전부서 |
| 이월사업비 과다 | 2016 | 2017 | 2018 | 전부서 |
| 자금 없는 이월사업 | 2016 | 2017 | | 주민복지과, 관광정책과, 균형개발과 |
|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 2016 | 2017 | 2018 | 전부서 |
| 집행잔액 과다 | | 2017 | 2018 | 전부서 |
| 체납액 과다(세외수입) | 2016 | 2017 | 2018 | 재무과 |
| 체납액 과다(융자금) | 2016 | 2017 | 2018 | 자치행정과 |

▷ 개선 및 권고사항

-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치 결과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매년 개선 및 권고를 받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 관련부서 : 관광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단양관광관리공단 재정운영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비고 |
|----------|-----------|-----------|-----------|-----------|-----------|----|
| 공단전출금 | 3,800,016 | 4,143,825 | 4,876,240 | 5,766,863 | 5,738,639 | |
| 소 계 | 2,403,597 | 2,406,775 | 2,497,264 | 2,330,737 | 2,531,698 | |
| 다리안관광지 | 164,216 | 215,787 | 205,805 | 201,503 | 234,897 | |
| 대강오토캠핑장 | 64,303 | 64,583 | 45,851 | 26,781 | 35,266 | |
| 소선암오토캠핑장 | 138,945 | 141,338 | 143,414 | 122,971 | 129,246 | |
| 소선암자연휴양림 | 270,630 | 305,756 | 347,012 | 397,830 | 434,474 | |
| 온달관광지 | 712,742 | 679,963 | 529,748 | 545,014 | 492,849 | |
| 광공업전시관 | 2,752 | 0 | 0 | 0 | 0 | |
| 도담음악분수대 | 12,448 | 0 | 0 | 0 | 0 | |
| 천동관광지 | 86,921 | 89,325 | 47,465 | 55,122 | 48,685 | |
| 골프연습장 | 111,775 | 111,315 | 107,005 | 46,995 | 128,879 | |
| 눈썰매장 | 77,094 | 81,137 | 60,393 | 0 | 0 | |
| 블링장 | 73,624 | 79,492 | 119,794 | 115,456 | 94,251 | |
| 고수동굴주차장 | 235,209 | 125,890 | 328,896 | 304,184 | 328,267 | |
| 도담삼봉주차장 | 349,676 | 407,054 | 473,618 | 441,975 | 486,467 | |
| 다누리지하주차장 | 25,464 | 26,580 | 9,191 | 0 | 0 | |
| 시외버스터미널 | 77,791 | 78,216 | 79,070 | 72,902 | 72,427 | |
| 사계절썰매장 | 0 | 0 | 0 | 0 | 43,754 | |
| 황포돛배 | 0 | 0 | 0 | 0 | 2,230 | |
| 사업비용 | 3,570,279 | 3,904,691 | 4,534,326 | 4,818,072 | 5,028,265 | |
| 사업수지비율 | 67.32% | 61.64% | 55.07% | 48.37% | 50.35% | |

○ 최근 5년간 단양관광관리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비고 |
|------|-------|-------|-------|-------|-------|----|
| 평가결과 | 라 | 다 | 다 | 라 | 라 | |

* 평가등급분류: 가(최고등급) ~ 마(최저등급)

▷ 개선 및 권고사항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총 14개 시설로, 전체적인 수지면에 있어서는 불임 [현황 1]에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은 전년대비 28,224천원이 감소한 738,639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수입금이 전년대비 200,961천원 증가한 2,531,698천원인데 비해, 사업비용 역시 전년대비 210,193천원이 늘어난 5,028,265천원에 이르고 있어, 사업수입/사업비용을 나타내는 수지비율은 48.37%로 수지간의 격차는 전년대비 6.7%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난 5년간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역시 2013년에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이후 계속 하향 평가되어 2019년에도 [라 등급]에 머물러있는 실정으로,
- 단양관광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은 단양군의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시설물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라는 수입적 측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시설운영의 특성상 수지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입증대는 꼭 필요한 측면임으로 단기적으로는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관광패턴의 추세를 반영한 개소별 특성이 부각된 시설보완과 홍보를 강화하여 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군에서 직영중인 관광기반시설 중 수익 보장되는 시설의 관리 전환을 포함하여 긴 안목에서 독립채산의 책임운영을 위한 운영 방식의 개선도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 관련부서 : 관광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재산내역
 - 위치 :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길 355
 - 건물

| 구분 | 용도 | 면적(m ²) | 비고 |
|----|-----------|---------------------|----|
| 계 | | 323.44 | |
| 1층 | 휴게시설(매점) | 104.84 | |
| 2층 | 휴게시설(전망대) | 103.41 | |
| 3층 | 휴게시설(사무실) | 115.19 | |

- 「단양군 양방산 전망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관리)에 의하면 본 시설물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09년까지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였으나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 수탁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하였고 2016년 분쟁이 해결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양방산 전망대는 지역주민의 편익공간 제공은 물론 활공동호인 및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 관광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법규명

1. 단양군 도담삼봉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칙

-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규칙과 단양군 도담삼봉음악분수시설 관리 운영조례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 또는 규칙으로 관광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 정비됨에 따라 조례도 같이 정비되어야 하나,
- 도담삼봉음악분수시설은 2018년 철거하고 다른 시설로 정비되었으며 천동 관광지 내 파3골프장 역시 철거하고 오토캠핑장으로 재조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조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관광패턴의 변화에 따라 기존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변경 또는 신설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적기에 개정 또는 제정하여 관광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 관련부서 :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시설의 전기 사용계약시 설정된 계약전력이 과도하거나 시설의 변경 등으로 전력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여 계약전력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수시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전기사용료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2003년도 일반용(을) 고압전력 A로 계약전력 450kW를 사용 신청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1년 동안 최대수요전력은 100kW를 넘는 경우가 1번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최대수요전력은 172.36kW가 최고치였습니다.

- 최근 1년간 월별 최대수요전력

| 월별 | 2019년 | | | | | | | | 2020년 | | | |
|----------|-------|----|----|----|----|-----|-----|-----|-------|----|----|----|
|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 최대수요(kW) | 96 | 74 | 85 | 98 | 82 | 42 | 59 | 85 | 101 | 79 | 47 | 46 |

- 최근 5년간 연간 최대수요전력

| 년도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최대수요(kW) | 172.36 | 158.48 | 161.00 | 160.12 | 140.92 |

-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계약전력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전력을 낮출시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청소년 수련관 전기요금 납부 내역

| 년도별 | 사용량(kW) | 전기요금(원) | 비 고 |
|------|---------|------------|-----|
| 2017 | 499,834 | 68,348,780 | |
| 2018 | 569,834 | 73,831,460 | |
| 2019 | 412,163 | 57,945,250 | |

- 계약전력 변경시 예상요금

- 2019년 월평균 사용량 : 412,163 ÷ 12개월 = 36,346kW
- 전기요금 예시 (월 34,346kW사용 / 사회복지시설)

| 구분 | 계약종별 | 계약전력 | 전기요금(천원) | | | | |
|----|--------|-------|----------|-------|-------|-------|-------|
| | | | 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복지할인 | 부가세 등 |
| 현재 | 일반용(을) | 450kW | 4,884 | 3,249 | 2,888 | 1,841 | 588 |
| 변경 | 일반용(갑) | 200kW | 3,106 | 1,434 | 2,469 | 1,171 | 374 |

※ 요금합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복지할인 + 부가세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 계약전력을 450kW에서 200kW로 변경시 연간 21,336천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청소년 수련시설은 예시로 작성된 것으로 양백폭포, 수양개 전시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과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의 수전설비에 대하여 각 전기기구의 최대 출력량을 합산하고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적정 소비전력을 산정하여 계약전력을 변경하는 등 전기사용량 절감을 위한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관련부서 : 보건소

▷ 현황 및 문제점

- 단양군 보건소 태양광 발전장치 현황
 - 구조물 : 발전시스템 47.3kw.(1층지붕 30.8kw/ 3층지붕 16.5kw)
 - 설치면적 : 280㎡(1층지붕182㎡/ 3층지붕 97㎡)
 - 시공계약 : 137백만원 (2015.5.29. 계약 / (주)에너솔라)
 - 기타사항 : 보건소신축 8,494백만원(2015.1~2016.10) 2016.10.26.개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신.증축 또는 개축 시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급의무비율은 2016년(18%)에서 2020년(30%)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 보건소에서는 2016년 보건소 이전신축 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신축 건물의 상징적 디자인을 고려한 나머지 신축건물 1층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 기울기를 주지 않고 수평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수평으로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은 눈, 빗물, 미세먼지 등이 쉽게 쌓여 에너지 생산 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관리소홀로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건소 건물 디자인을 최대한 살리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건축물의 디자인을 고려하되 발전시설 설치 선정 및 에너지 발전 효율 등의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 관련부서 : 관광정책과, 단양관광관리공단

▷ 현황 및 문제점

- 천동par3 골프장의 캠핑장변경 사업현황
 - 사업기간 : 2016. 7. 13.~2017. 5. 19.
 - 사 업 비 : 390,612천원
- 최근 운영현황

(단위:명/천원)

| 구 분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
| | 이용자 | 사용료 | 이용자 | 사용료 | 이용자 | 사용료 | 이용자 | 사용료 | 이용자 | 사용료 |
| par3골프장 | 1,056 | 5,886 | 1,806 | 2,005 | | | | | | |
| 캠핑장 | | | | | 65 | 1,550 | 138 | 2,448 | 10 | 260 |

▷ 개선 및 권고사항

- 천동par3 골프장을 캠핑장으로 사업변경을 하면서 390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지만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에는 10명이 캠핑장을 사용하여 260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바
- 시설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적극검토 후 활성화 방안 등 시설운영 개선 등을 권고합니다.

※ 우수사례

<우수사례 1>

전국구로 통하는 단양군의 세무행정

□ 추진성과

○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2019. 11. 12)

- “확신을 갖고 대법원까지 나이스 샷!” (골프장 취득가액 누락 세무조사 추징사례 / 재무과 세무7급 이미선)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페터널 관광상품화 「BTO방식-수익자쿼터제」로 단양군을 경영하다” (재무과 세무8급 김혜련):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교부세 2억원 확보

○ 2019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2019. 10. 30)

- “비만세 결국은 현실화될 지방세” (재무과 세무6급장 김기창): 특별상수상

□ 언론보도 내용

금강일보

단양군 전국 유일 세정부문 3관왕 달성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선전
세출절감·세입증대 우수기관 영예

단양군의 세무행정이 각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2개 부문이 한꺼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부상으로 교부세 2억 원을 지원 받았다.

매년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칠 만큼 세무행정에서 중요한 대회다.

특히 전국 규모 대회에서 세입증대 분야 2개의 사례가 동시에 좋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단양군이 전국 최초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2건은 골프장 취득가액 누락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10억 원의 세입 증대 사례와 단양군 야경명소 발돋움한 수양개빛터널을 BTO(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운영해 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입장료 수입의 일정 부분인 35억 원의 세외수입 증대 가능성을 제기한 사례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북 익산에서 개최된 '2019년 지방세 발전포럼' 부문에서 단양군이 특별상을 수상해 세정부문에서 전국 유일 3관왕을 기록했다. 이날 포럼에서 군은 비만은 법적·제도적 접근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함께 모색해야 할 문제라며 '비만세' 도입을 이야기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2014년에는 지방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6년에는 지방재정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는 등 세정분야에서 작지만 강한 단양군으로 정평이 나왔다.

설기철 재무과장은 "이러한 수상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수사례를 발굴·추진하는 등 세정연찬을 적극 지원해 지방재정의 연구개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세정분야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2019년 12월 23일 (월)
16면 지역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단양군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수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19. 12. 23일 / 09:54AM KST (월)

체육대회 개최 시 지역 상품권 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대회 시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지역재원의 관외유출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참가팀 지원금과, 대회시상금 등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 및 지역재원 관외 유출 방지

□ 추진목적

- 체육대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
- 참가팀 지원금 및 시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재원 관외 유출 방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1월 ~ 현재
- 추진대상: 전국단위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금, 대회 시상금
- 추진방법: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추진성과

- 2019년 계획 및 추진된 전지훈련 2회 , 체육대회 6회의 참가팀 지원금 및 입상팀 시상금을 총 123,688천원의 금액을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대회명 | 기간 | 주최 | 참여인원 | 단양사랑상품권 구입액(천원) | 비고 |
|----------------------|------------------------|----------|--------|--------------------|--------------------|
| 동계 중배구 전지훈련 | 1. 10. ~ 1. 14. (5일) | 대한중고배구연맹 | 675명 | 27,000 | 훈련지원금 |
| 동계 초중배구 전지훈련 | 2. 18. ~ 2. 22. (5일) | 한국초등배구연맹 | 900명 | 10,000 | 훈련지원금 |
| 춘계 전국남녀 중고배구대회 | 3. 15. ~ 3. 21. (7일) | 대한중고배구연맹 | 2,113명 | 11,000 | 대회참가지원금 |
|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 | 4. 12. ~ 4. 14. (3일) | 대한배구협회 | 3,000명 | 16,000 | 대회참가지원금 |
| 대한배구협회장기 전국교육대학남배구대회 | 8. 7. ~ 8. 8. (2일) | 대한배구협회 | 400명 | 5,500 | 대회참가지원금 |
| 추계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 10. 18. ~ 10. 22. (5일) | 한국초등배구연맹 | 2,000명 | 24,000 | 대회참가지원금 |
| 대한배구협회장기 전국남녀 배구대회 | 11. 2. ~ 11. 3. (2일) | 대한배구협회 | 2,000명 | 11,300 | 대회시상금 |
| 박계조배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 | 12. 14. ~ 12. 15. (2일) | 한국중고배구연맹 | 2,000명 | 18,888 | 대회참가지원금 2위팀 시상금 |

□ 관련사진

충북일보



단양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6회 단양팔경 오픈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승부를 겨루고 있다. 사진제공=단양군

단양서 체육인들 열전 펼쳤다

잔도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 배드민턴대회 4천여명 참가

단양군은 지난 주말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4천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 체육경기가 열렸다.

지난 16일 공설운동장에서는 90개 팀 2천200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1회 단양강 잔도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가 열렸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가 이뤄졌다. 같은 날 국민체육센터에서는 6회 단양팔경 오픈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열려 668개 팀 2천 명이 참여해 부상자 없는 안전한 경기로 마무리 됐다. 군 관계자는 "이른 시간부터 치러진 경기로 인해 많은 팀들이 대회 전날 도착해 마무리에 따라 지역 경제에 많은 부분 보탬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ho-do@hanmail.net 11.2 X 14.6 cm

신문보도자료 (2019. 11. 20.일자)

충청매일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경제효과 82억7000만원

지난해 스포츠인 12만3753명 방문
올해 전국단위 체육대회 45개 개최

단양군이 지난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국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 2019년 전국스포츠산업경쟁력 지수 1위를 기록하며 스포츠인들 유치를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만3753명 방문을 넘어 올해 15만 명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양군은 지난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국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 2019년 전국스포츠산업경쟁력 지수 1위를 기록하며 스포츠인들 유치를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은 지난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국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 2019년 전국스포츠산업경쟁력 지수 1위를 기록하며 스포츠인들 유치를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만3753명 방문을 넘어 올해 15만 명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양군은 지난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국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 2019년 전국스포츠산업경쟁력 지수 1위를 기록하며 스포츠인들 유치를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은 지난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국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 2019년 전국스포츠산업경쟁력 지수 1위를 기록하며 스포츠인들 유치를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만3753명 방문을 넘어 올해 15만 명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양군은 지난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국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 2019년 전국스포츠산업경쟁력 지수 1위를 기록하며 스포츠인들 유치를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 다양한 체육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선다.

장승주 | 승인 2019.12.12 21:30 | 댓글 0

14~15일 박계초배 9인제 배구대회 84개팀 2000명 배구동호인 참가



단양군은 관공 박수기인 겨울철 다양한 실내 체육행사를 개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단양에서 개최된 대한민국배구협회장기 전국실용배구대회 모습.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관공 박수기인 겨울철 다양한 실내 체육행사를 개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신문보도자료 (2019. 12. 12.일자)

충북일보



지난해 단양군 대표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규모의 탁구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이 열띤 경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단양군

스포츠 강군 단양 명성 이어간다

군, 전국단위 체육 행사 개최 스포츠 인프라 확충도 만전

단양군이 관공 박수기인 겨울철 다양한 실내 체육행사를 개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단양에서 개최된 대한민국배구협회장기 전국실용배구대회 모습.

단양군은 관공 박수기인 겨울철 다양한 실내 체육행사를 개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단양에서 개최된 대한민국배구협회장기 전국실용배구대회 모습.

단양군은 관공 박수기인 겨울철 다양한 실내 체육행사를 개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단양에서 개최된 대한민국배구협회장기 전국실용배구대회 모습.

신문보도자료 (2020. 1. 7.일자)

□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목적 달성에 기여
- 상품권 구입액 **총 123,688천원**의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발생
- 체육대회 개최 지역재원의 지역사회 유출 방지효과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고령 및 소규모 농업인 등 유통판로가 미비한 농가들의 영농 편의 증진 제고와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추진목적

- 농산물 수집 거점장소를 지정하여 순회수집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농가에서는 거점 장소로 농산물 출하
- 70세 이상 고령농 및 장애농가 등의 취약농가는 집까지 방문하여 농산물 순회 수집 후 대금 정산하는 체계 마련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 31.
- 사업비: 200,000천원(균비 100%)
- 사업시행: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민간위탁
- 대상품목: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
- 지원내용
 - 농산물 순회수집 인건비(급여, 수당, 상여금, 4대보험료 등) 지원
 - 물류비(차량 임차비 및 유지비, 농산물 수송비 등) 지원
 - 농산물 순회수집 사업 참여자 포장재 지원
 - 농산물 순회수집 관리·운영·홍보비 등 지원

추진방법

- 3개 권역별 순회수집팀 운영/ ※ 전담 인력 상용직 2명 채용
- 지정 및 예약제도 운영
 - (지정): 거점장소 출하→법인에서 수집→공판장 출하→정산
 - (예약): 농가로 찾아가는 순회수집 차량 운행(☎ 422-9222)
- 농협지점과 연계한 순회수집 거점장소 운영(농협+마을거점)
 - 농협지점(9개소): 단양, 단성, 대강, 가곡, 영춘, 별방, 어상천, 적성, 각기
 - 마을거점(유동적): 농산물 출하시기별 마을거점 지정 수집

| 구분 | 월요일(매주) | 수요일(매주) | 금요일(매주) |
|-----------------------|---|---|--|
| 거점마을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 10:00 상원곡리 11:00 기촌리 11:30 노동리 12:00 성금리 | 10:00 대대1리 10:30 향산리 11:30 덕문곡리 12:00 연곡리 13:00 도곡리 | 10:00 의풍1리 11:00 동대리 11:30 백자리 12:00 남천1리 |

※ 해당 요일 중 공휴일은 제외하며, 또한 순회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농산물 순회수집 확대 운영

-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및 외식소비 급감에 따른 농산물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활성화 지원
- 운영기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주요내용
 - 당초: 일반농가(거점장소 출하)와 취약농가(농가 방문) 구분 추진
 - 변경: 사과를 포함하여 관내 모든 농산물을 재배하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수집 출하지원으로 확대 운영(예약제)

☐ 운영실적 (2020. 4. 13.기준)

- 취급품목: 18종(백태, 서목태, 서리태, 수수, 적두, 차조, 기장, 녹두, 메밀, 건고추, 참깨, 들깨, 메조, 오미자, 옥수수, 사과, 봄나물 등)
- 취급량: 951농가 / 907톤 / 3,671백만 원
 - 단양사과 선별포장 및 출하 지원(17농가/ 37톤/ 56백만 원)
 - 봄나물 및 잡곡 순회수집 지원(17품목/ 870톤/ 3,615백만 원)

☐ 관련사진



신문 보도자료(2020.04.01.)



방송 보도자료(2020.04.19.)

☐ 기대효과

- 지역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을 수량에 관계없이 순회 수집하여 도매시장 출하를 통한 농가일손 및 영농비 절감으로 안정적 농가 소득증대 기여
-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와 유통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전담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단양농산물 유통활성화 도모

적극적인 하천정비 사업으로 재해 사전예방

□ 사업배경

- 하천의 오랜 퇴적층으로 물 흐름을 저해하여 홍수시 범람에 따른 재해발생 우려
- 갈대 및 수목제거 등 환경미화를 위한 하천정비 민원요구

□ 사업실적

- 소 하 천: 15개소 / 16km / 221,810천원(군비 221,810천원)
- 지방하천: 21개소 / 18km / 384,000천원
(도비384,000천원, 군비90,000천원, 기금130,000천원)

□ 기대효과

- 홍수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난재해 예방
- 오염물이 퇴적된 바닥을 준설함으로서 수질 오염원 제거

□ 현장사진(전,후)

- 대강면 괴평리 남조천 정비공사



IV.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내용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 연번 | 지 적 사 항 | 소 관 부 서 | 조치 사항 |
|----|----------------------------|--------------|-------|
| 1 | 단양관광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반납 철저 | 관광정책과 | 주의 |
| 2 |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액 과다 | 자치행정과 외 9 | 주의 |
| 3 | 예비비 사용승인 후 결산서 작성 소홀 | 농업축산과 | 주의 |
| 4 | 집행잔액 3억 이상 주요사업 | 자치행정과 외 6 | 주의 |
| 5 |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과다 | 지역경제과 | 주의 |
| 6 | 단양관광관리공단 전출금 편성 철저 | 관광정책과 | 주의 |
| 7 |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 전부서 | 주의 |
| 8 |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 | 각 부서 | 주의 |
| 9 | 착오 세입금 환급 과다 발생 | 재무과 | 주의 |
| 10 | 지방세 체납금 징수관리 철저 | 재무과 | 시정 |
| 11 | 세입수입 체납액 과다 | 세외수입부서 | 시정 |
| 12 |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액 징수 철저 | 자치행정과 | 시정 |
| 13 |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 재무과 | 시정 |
| 14 | 예산이월 부적정 | 주민복지과 | 주의 |
| 15 | 순수 군비사업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 전부서 | 주의 |
| 16 | 예비비 사용 및 정산 부적정 | 균형개발과 | 주의 |
| 17 | 기금 활성화 및 존치여부 검토 | 환경위생과, 농업축산과 | 주의 |
| 18 |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 | 균형개발과 | 주의 |
| 19 | 지역개발사업의 신속추진 | 농업축산과, 보건소 | 주의 |
| 20 | 부적절한 예산전용 지양 | 안전건설과 | 주의 |
| 21 | 성과보고서 성과달성도 제고 | 전부서 | 주의 |
| 22 | 국도비 보조금사업 자금미교부 집행 | 균형개발과 | 주의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영 갑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관광정책과 | 2018 | 주의 | | | |

제 목 : 단양관광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반납 철저

《 현황 》

- 단양관광관리공단 2017년 대행사업비 중 연차수당이 62,607,950원으로 산정되어, 2018년 1월 지급하고자 2017년 대행사업비 중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만 단양군으로 반납하였음.
하지만 단양관광관리공단 예산담당직원의 변동 등으로 연차수당을 2017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2018년 예산으로 집행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 2017년 대행사업비 중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했던 62,607,950원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었음. 이 내용은 단양관광관리공단 2018년 자체결산 중 확인됐으며 이자를 포함하여 2019. 4. 15. 단양군으로 반납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단양관광관리공단회계규정에 의거 2017년도 발생이 확정된 지출 건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으로 집행됐어야 하나, 회계관리 미흡으로 2018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오류를 범했음. 이에 회계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수당의 경우 미리 예측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잔액 반납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함.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 치 결 과 | 완료 여부 |
|--|----------|
| ○ 공단대행사업비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집행잔액 반납에 철저를 기하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 실시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영 갑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자치행정과 외 9 | 2018 | 주의 | | | |

제 목 :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액 과다

《 현황 》

○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별 | 전 용 | | 변 경 | | 비 고 |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 계 | 12 | 296,822 | 28 | 1,243,132 | |
| 자치행정과 | | | 3 | 81,500 | |
| 주민복지과 | 4 | 30,840 | 4 | 707,785 | |
| 문화체육과 | 1 | 84,038 | 5 | 65,135 | |
| 재무과 | | | 1 | 35,000 | |
| 지역경제과 | | | 1 | 5,000 | |
| 환경위생과 | | | 2 | 247,200 | |
| 농업축산과 | 1 | 1,944 | 4 | 23,022 | |
| 산림녹지과 | | | 7 | 66,490 | |
| 안전건설과 | 6 | 180,000 | | | |
|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 | | 1 | 12,000 | |

○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예산지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예산이용·전용·이체 제도를 두고 있음.

- 2018회계연도 중 전용은 12건 296,822천원, 변경은 28건 1,243,132천원을 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미흡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예산전용·변경은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예산을 의회승인 없이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의회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람.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 치 결 과 | 완료 여부 |
|---|----------|
| ○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전용·변경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자체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영 갑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농업축산과 | 2018 | 주의 | | | |

제 목 : 예비비 사용승인 후 결산서 작성 소홀

《 현황 》

○ 예비비 명세서

(단위: 천원)

| 세 부 사 업 |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지출잔액 | 미집행율 | 실집행액 |
|-----------------|--------|-----|--------|------|--------|
| 식 량 작 물 (긴 급) | 86,000 | 0 | 86,000 | 100% | 84,926 |
| 사 무 관 리 비 | 25,200 | | 25,200 | | 24,178 |
| 공 공 운 영 비 | 3,635 | | 3,635 | | 3,593 |
| 재 료 비 | 13,325 | | 13,325 | | 13,324 |
|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 43,840 | | 43,840 | | 43,831 |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농작물가뭄대책비로 86,000천원을 예비비 사용승인 후 집행은 하고도 결산서에 미집행으로 정리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비비를 사용승인 후 결산서상 집행잔액으로 정리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함.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 치 결 과 | 완료 여부 |
|---|----------|
| ○ 예비비 사용승인 후 집행과 결산서 작성업무 철저를 기하도록 직원 자체교육 실시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영 갑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자치행정과 외 6 | 2018 | 주의 | | | |

제 목 : 집행잔액 3억 이상 주요사업

《 현황 》

○ 집행잔액 3억 이상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 부서명 | 회계구분 | 세부사업 | 통계목 | 예산현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
| 합계 | | | | 42,416 | 6,851 | 8,978 | 78.84% |
| 자치행정과 | 일반회계 | 선거업무 추진 | 자치단체간 부담금 | 981 | 0 | 418 | 57.42% |
| 문화관광과 | 일반회계 |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 | 시설비 | 1,547 | 321 | 304 | 59.52% |
| | 일반회계 | 지방공기업설립 |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 5,043 | 0 | 781 | 84.51% |
| | 일반회계 | 지질예술공원조성사업 | 시설비 | 1,589 | 92 | 1,497 | 0.00% |
| 주민복지실 | 일반회계 | 매포읍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 사업 | 민간자본 사업보조 | 2,000 | 0 | 2,000 | 0.00% |
| 민원봉사과 | 일반회계 | 선진교통문화 정착 | 운수업계 보조금 | 4,700 | 0 | 445 | 90.53% |
| | 일반회계 | 선진교통문화 정착 | 시설비 | 2,201 | 35 | 548 | 73.50% |
| 재무과 | 일반회계 |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 시설비 | 4,040 | 253 | 510 | 81.10% |
| 균형개발과 | 일반회계 |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 시설비 | 3,797 | 1,964 | 365 | 38.65% |
| | 일반회계 |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 | 시설비 | 6,461 | 2,648 | 1,086 | 42.20% |
| 상하수도 사업소 | 일반회계 |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 시설비 | 4,933 | 1,538 | 368 | 61.34% |
| | 일반회계 | 내부거래지출 | 기타회계 전출금 | 4,824 | 0 | 356 | 92.62% |
| 균형개발과 | 특별회계 | 군립 임대아파트 임대 및 운영 | 과오납금등 | 300 | 0 | 300 | 0.00% |

○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과 적기 예산집행 태만, 추정시 소극적인 감액결정에 기인한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 예산절감에 따른 낙찰 차액을 제외한 기타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성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하시길 권고함.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치결과 | 완료여부 |
|--|------|
| ○ 예산의 적기 집행과 추경예산에서 조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자체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영 갑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지역경제과 | 2018 | 주의 | | | |

제 목 :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과다

《 현황 》

-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예산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 예산현액 | 세입 | 세출 | 결산상 잉여금 | 이월액 | 순세계 잉여금 |
|-------|-------|-----|------------|-----|------------|
| 6,190 | 6,221 | 368 | 5,853 | 0 | 5,853 |

<세입결산>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입총액 | 실 제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
| 6,190 | 6,221 | 6,221 | 6,221 | 0 | 0 |

<세출결산>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액 | 집행잔액 | |
|-------|-----|-----|------------|------|-------|
| | | | | 지출잔액 | 예비비 |
| 6,190 | 368 | 0 | 0 | 80 | 5,742 |

- 위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92%를 차지하고 결산내역을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결산규모의 95%에 육박함.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단서 조항에서는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적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길 바람.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치결과 | 완료여부 |
|--|------|
| ○ 예산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일반회계 전출 여부를 결정하여 예비비 과다 편성 방지하도록 업무연찬 실시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영 갑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관광정책과 | 2018 | 주의 | | | |

제 목 : 단양관광관리공단 전출금 편성 철저

《 현황 》

- 단양관광관리공단 전출금집행 및 사업수지 비율

(단위: 천원)

| 구분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공단전출금(경상·자본) | | 3,559,201 | 4,178,930 | 4,385,023 |
| 사업수지 | 사업수입 | 2,406,776 | 2,497,265 | 2,330,737 |
| | 사업비용 | 3,904,695 | 4,534,325 | 4,818,072 |
| | 사업수지비율* | 61.63% | 55.07% | 48.37% |

* 사업수지비율(%) = (사업수익/사업비용)×100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단전출금과 공단의 사업비용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사업수입은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수지비율로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공단에 대한 경영개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공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단 경영평가보고서를 반영하여 전출금 예산편성하도록 권고함.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 치 결 과 | 완료 여부 |
|---|----------|
| ○ 공단경영개선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공단 경영평가보고서를 반영하여 전출금 예산편성하도록 직원교육 실시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명 수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담당관·과·소 | 2018 | 주의 | | | |

제 목 :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 현황 》

- 예산이월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건수 | 금액 | 비고 |
|---------|-----|--------|----|
| 합 계 | 205 | 90,038 | |
| 명 시 이 월 | 140 | 66,566 | |
| 사 고 이 월 | 58 | 16,444 | |
| 계속비이월 | 7 | 7,028 | |

- 이월예산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행정절차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민원발행, 공사기간 부족, 추경반영 등으로 이월사업비가 90,038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8%이며, 전년대비 15.6%가 증가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 예산편성시 실제집행 여부와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통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가는 노력을 권고함.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 치 결 과 | 완료 여부 |
|--|----------|
| ○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철저로 예산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부서별 직원자체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명 수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재무과, 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 2018 | 주의 | | | |

제 목 : 세입금 환급액 과다 발생

《 현황 》

○ 세입금 환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환급액 | 행정기관 착오 | 납세자 권리구제 | 납세자 착오 | 차량· 미등기 | 국세경정 | 법령개정 | 기타 |
|------|---------|------------|-------------|-----------|------------|---------|------|---------|
| 합 계 | 839,186 | 23,950 | 1,129 | 24,291 | 35,237 | 399,069 | 11 | 355,498 |
| 일반회계 | 807,920 | 1,457 | 280 | 24,146 | 35,237 | 399,069 | 11 | 347,720 |
| 특별회계 | 31,266 | 22,493 | 849 | 145 | | | | 7,778 |

-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착오로 민원을 야기 시키는 세입금 환급액이 839백만원으로서 과다하게 발행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세입환급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 원인별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환급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줄여주시기를 권고함.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 치 결 과 | 완료 여부 |
|--|----------|
| ○ 각 세목별 담당자에게 부과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환급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명 수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재무과 | 2018 | 시정 | | | |

제 목 :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관리 철저

《 현황 》

○ 지방세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 수 납 액 |
|---------|--------|--------|-------|---------|
| 합 계 | 20,447 | 19,228 | 20 | 1,198 |
| 주 민 세 | 1,117 | 1,096 | | 20 |
| 재 산 세 | 2,904 | 2,823 | | 81 |
| 자 동 차 세 | 7,052 | 6,770 | | 282 |
| 담배소비세 | 2,398 | 2,398 | | 0 |
| 지방소득세 | 6,466 | 6,223 | | 243 |
| 지난년도수입 | 510 | -82 | 20 | 572 |

○ 지방세 미수납액이 1,19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7%(876백만원)가 증가하여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미수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결손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징수가 어렵다고 확인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검토하시기 바람.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치결과 | 완료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 대책 수립(2019. 2. 12.) ○ 2019년 지방세 징수 읍·면 평가 계획수립(2019. 4. 24.): 징수종합평가와 더불어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30만원이하 소액체납액 평가도 별도 실시 ○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따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 수립(2019. 4. 30): 5~6월 기간 동안 주 2회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명 수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재무과 | 2018 | 시정 | | | |

제 목 : 세외수입 체납액 과다

《 현황 》

○ 세외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 수 납 액 |
|-----------|--------|--------|-------|---------|
| 합 계 | 18,535 | 16,397 | 0 | 2,134 |
| 재산임대수입 | 1,615 | 1,604 | | 11 |
| 사 용 료 수 입 | 7,276 | 7,245 | | 31 |
| 수 수 료 수 입 | 732 | 723 | | 9 |
| 사 업 수 입 | 1,245 | 1,243 | | 2 |
| 부 담 금 | 95 | 95 | | 6 |
| 과징금 및 과태료 | 205 | 136 | | 69 |
| 기 타 수 입 | 5,249 | 5,235 | | 14 |
| 지난연도수입 | 2,118 | 116 | | 1,992 |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원으로서 미수납액이 2,134 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로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11.5%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미수납한 체납액 2,134백만원을 원인별, 유형별로 분석하여 조속히 징수하고 수시로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치결과 | 완료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 수립: 재무과-3663호 ○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5.1.~6.30.)운영: 재무과-10240호 ○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따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 수립(2019. 4. 30): 5~6월 기간 동안 주 2회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부서별 과년도 체납액 중 시효 소멸, 무재산 등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결손처분 실시(28,851,570원)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명 수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자치행정과 | 2018 | 시정 | | | |

제 목 : 주민소득지원사업 용자금 체납액 징수철저

《 현황 》

○ 주민소득지원사업 용자금 체납현황

(단위: 천원)

| 용자기간 | 체납자 | 체납액 | 원금 | 약정이자 | 연체이자 |
|--------------------------|--------------|---------|--------|------|---------|
| 199.01.12~ 2010.01.13 | 십OO 외 14명 | 218,068 | 94,529 | 975 | 122,564 |

○ 십OO 외 14명에 용자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용자금 체납액이 218,068 천원으로서 최장 20년부터 최단 9년까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체납액을 원인별, 유형별로 분석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치결과 | | | | | | | 완료 여부 |
|--|----------|-----------|-------------|-----|----|----|----------|
| <p>□ 조치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원인별, 유형별 분석 | | | | | | | 추진중 |
| 원인 | 무재산 | 소재불명 | 불성실 납부의지 | 납부중 | 기타 | 합계 | |
| 인원수 (명) | 1 | 1 | 9 | 2 | 2 | 15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징수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징수 계획 수립 완료 - 주기적인 고지서, 독촉장 발송 및 유선 연락 중 - 법원 민사 절차를 통한 체납자, 연대보증인의 소재지 파악 및 재산 조회 실시 예정 - 상환 여부, 납부 의지 파악 등을 통해 법적 조치 계획 수립 (가압류, 지급명령, 경매 등) ○ 체납액 징수 계획(6월 이후) | | | | | | | |
| 방법 | 성실 납부 | 간헐적 납부 | 법적조치 | 기타 | 합계 | | |
| 인원수 (명) | 7 | 1 | 5 | 2 | 15 | |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명 수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전부서 | 2018 | 주의 | | | |

제 목 :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 현황 》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순 세 계 잉 여 금 (①+②+③-④) | 초 세 입 금 ① | 자 금 없 는 이 월 액 ② | 집 행 잔 액 ③ | 보 조 금 반 납 액 ④ |
|---------|--------------------------|--------------|--------------------|--------------|------------------|
| 합 계 | 54,116 | 1,263 | 1,544 | 54,207 | 2,898 |
| 일 반 회 계 | 38,106 | 5,666 | 1,544 | 33,445 | 2,549 |
| 특 별 회 계 | 16,010 | -4,403 | | 20,762 | 349 |

○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이 54,116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9%로 전년대비 8.1% 감소하였으나,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가용재원을 사장하였음.

○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영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편성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함.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 치 결 과 | 완료 여부 |
|--|----------|
| ○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으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아니하고 유용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명 수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재무과 | 2018 | 시정 | | | |

제 목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현황 》

○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단위: 천원)

| 현 금 종 류 | 건 수 | 금 액 | 비 고 |
|------------|-----|--------|-----|
| 합 계 | 31 | 68,358 | |
| 하 자 보 증 금 | 1 | 2,040 | |
| 산 립 훼손 복구비 | 5 | 8,921 | |
| 이 행 보 증 금 | 15 | 49,735 | |
| 일 시 보 관 금 | 10 | 7,662 | |

- 하자보증금 외 30건에 68,358천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최단 1년부터 최장 6년간 반환청구가 없다는 사유로 현금을 보관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 제7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5년이 지난 보증금은 귀속시켜 세입조치하고 반환청구를 권고함.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치결과 | 완료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 완료: 11건/ 17,262천원 (이행보증금 1건/ 9,600천원, 일시보관금 10건/ 7,662천원) ○ 예탁기간 연장: 1건/ 20,000천원 (이행보증금 1건/ 20,000천원) ○ 반환추진 중: 19건/ 31,096천원 (하자보증금 1건/ 2,040천원, 산림훼손복구비 5건/ 8,921천원, 이행보증금 13건/ 20,135천원) | 추진중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장 명 수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주민복지과 | 2018 | 주의 | | | |

제 목 : 예산이월 부적정

《 현황 》

○ 이월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사 업 명 | 예 산 현 액 | 집 행 액 | 집 행 잔 액 |
|---------------|----------------------|---------|-------|---------|
| 2018년 명시이월 | 매포읍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사업 | 2,000 | 0 | 2,000 |
| 2019년 당초예산 | 〃 | 2,000 | - | - |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바, 2017회계연도에 명시이월 승인을 얻은 매포읍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사업비를 2018회계연도 결산시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 2019회계연도에 매포 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여 사업비 집행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이월사업비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함.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 치 결 과 | 완료 여부 |
|---|----------|
| ○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이월사업비를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업무연찬 실시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김진태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전부서 | 2018 | 주의 | | | |

제 목 : 순수 군비사업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 현황 및 문제점 》

- 순수 군비사업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

(단위:천원)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
| 생산적 감사활동외 42건 | 276,351 | 0 | 276,351 |

*세부내역: 붙임참조

- 2018회계연도 순수 군비로 계획된 세부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은 46건에 276,351천원으로 예산 성립후 집행없이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함.
-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할 순수가용재원을 집행하지 않아도 될 불요불급한 사업에 묶어 두는 것은 예산의 사장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부족을 가중시켜 자치행정 에 대한 주민 신뢰저하의 원인이 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 모든 사업은 선정시 필요와 완급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예산성립후에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미집행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사업이 발생한다면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 적극 참고함으로써 유사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주민신뢰를 제고해 주실 것을 권고함.

○ 순수 준비사업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현액 | 지출잔액 |
|-------|------------------------|-----------|---------|---------|
| 합계 | 43건 | | 276,351 | 276,351 |
| 기획감사실 | 생산적 감사활동 | 기타보상금 | 2,000 | 2,000 |
| 기획감사실 | 예산편성관리 운영 | 기타보상금 | 5,000 | 5,000 |
| 자치행정과 |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업무 추진 | 포상금 | 3,900 | 3,900 |
| 자치행정과 | 이반장 및 민간단체 업무 | 행사실비보상금 | 2,420 | 2,420 |
| 자치행정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사무관리비 | 420 | 420 |
| 자치행정과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친절교육 | 사무관리비 | 30,000 | 30,000 |
| 자치행정과 | 인구늘리기 | 기타보상금 | 40,000 | 40,000 |
| 자치행정과 | 국제교류 사업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1,015 | 21,015 |
| 자치행정과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행사실비보상금 | 1,000 | 1,000 |
| 자치행정과 | 평생교육 인·물적 네트워크 | 행사실비보상금 | 2,000 | 2,000 |
| 문화관광과 |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 | 행사실비보상금 | 300 | 300 |
| 문화관광과 |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 공공운영비 | 1,800 | 1,800 |
| 주민복지실 | 노인복지운영 | 의료및구료비 | 2,100 | 2,100 |
| 주민복지실 | 장애인 복지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 | 45,000 | 45,000 |
| 주민복지실 |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 행사실비보상금 | 400 | 400 |
| 민원봉사과 | 국토관리 | 기타보상금 | 2,000 | 2,000 |
|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 행사실비보상금 | 1,204 | 1,204 |
| 지역경제과 | 공공근로사업 | 사무관리비 | 2,000 | 2,000 |
| 지역경제과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 행사실비보상금 | 500 | 500 |
| 지역경제과 | 일자리 종합지원사업 | 공공운영비 | 7,000 | 7,000 |
| 환경위생과 | 고운골자연학습원 운영 | 사무관리비 | 500 | 500 |
| 환경위생과 | 지질공원 기반구축 사업(자체) | 행사운영비 | 5,000 | 5,000 |
| 환경위생과 | 지질공원 기반구축 사업(자체) | 행사실비보상금 | 8,000 | 8,000 |
| 환경위생과 | 배출업소 관리 및 수질오염 사고 대비 | 행사실비보상금 | 3,600 | 3,600 |
| 환경위생과 | 쓰레기종량제 추진 | 시설비 | 5,000 | 5,000 |

○ 순수 준비사업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현액 | 지출잔액 |
|----------------|---------------------|-----------|--------|--------|
| 산림녹지과 |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 1,000 | 1,000 |
| 균형개발과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500 | 1,500 |
| 균형개발과 | 현안과제 추진 | 사무관리비 | 5,000 | 5,000 |
| 안전건설과 | 대전~방북간(군도9호선) 확포장사업 | 시설비 | 46,642 | 46,642 |
| 안전건설과 | 풍수해보험 추진 | 사무관리비 | 2,000 | 2,000 |
| 단양군의회 | 효율적인 의사운영 추진 | 외빈초청여비 | 3,000 | 3,000 |
| 보건소 |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포상금 | 1,000 | 1,000 |
| 보건소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지원사업 | 기타보상금 | 1,000 | 1,000 |
| 보건소 | 진료 서비스 제공 | 공공운영비 | 4,000 | 4,000 |
| 보건소 | 방문 보건 사업 | 기타보상금 | 3,000 | 3,000 |
| 보건소 | 정신건강증진사업 | 민간위탁사업비 | 3,000 | 3,000 |
| 보건소 |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 1,000 | 1,000 |
|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 만천하 스카이워크 운영 | 재료비 | 2,000 | 2,000 |
| 농산물 마케팅사업소 |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관리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615 | 3,615 |
| 대강면 | 노원 관리 | 공공운영비 | 750 | 750 |
| 영춘면 | 주민지원서비스 | 공공운영비 | 4,401 | 4,401 |
| 적성면 | 주민지원서비스 | 행사실비보상금 | 1,200 | 1,200 |
| 적성면 | 이·반장 활동지원 | 공공운영비 | 84 | 84 |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치결과 | 완료여부 |
|--|------|
| ○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진행 상황을 수지 점검하여 미집행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자체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김진태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균형개발과 | 2018 | 주의 | | | |

제 목 : 예비비 사용 및 정산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 예비비 사용 및 정산내역

(단위:천원)

| 구분 |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지출잔액 | 비고 |
|-------|--------|--------|--------|----------------|
| 계 | 50,000 | 30,450 | 19,550 | 2018.08.12지출결정 |
| 균형개발과 | 10,000 | 0 | 10,000 | |
| 단양읍 | 5,000 | 3,300 | 1,700 | 재배정 |
| 매포읍 | 5,000 | 5,000 | 0 | 〃 |
| 단성면 | 5,000 | 5,000 | 0 | |
| 대강면 | 5,000 | 3,025 | 1,975 | |
| 가곡면 | 5,000 | 0 | 5,000 | |
| 영춘면 | 5,000 | 5,000 | 0 | |
| 어상천면 | 5,000 | 5,000 | 0 | |
| 적성면 | 5,000 | 4,125 | 875 | |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 균형개발과에서는 계속되는 가뭄을 해소하고자 ‘가뭄해소 물웅덩이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00천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로 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후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일부만 집행하고 (균형개발과, 가곡면은 전액 미집행) 나머지 19,550천원을 지출잔액으로 남겨두면서 결산서상의 예비비사용 세부 명세서에는 50,000천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표시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예비비의 사용은 가급적 정확한 예산 수요를 판단하여 예비비의 지출액을 사실과 부합되게 결정함으로써 집행 후 잔액의 과다발생을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예비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다른 예비비지출 수요 발생에 원황이 대비하는 한편
- 예비비 집행 후에는 정확한 계산과 정산을 통하여 결산을 실시함으로써 재정운용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치결과 | 완료여부 |
|---|------|
| ○ 예비비 사용승인 전 집행 예상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용승인 후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 실시 및 연무연찬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김진태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환경위생과, 농업축산과 | 2018 | 주의 | | | |

제 목 : 기금 활성화 및 존치여부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 기금운영 현황

(단위:천원)

| 기금명 | 설치 연도 |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조성액 | | | 당 해 연도말 조성액 | 비고 |
|--------|----------|-------------|----------|--------|-----|-------------------|--------------|
| | | | 계 | 조성액 | 사용액 | | |
| 식품진흥기금 | 2003 | 81,936 | 43,624 | 43,624 | | 125,560 | |
| 농업발전기금 | 2011 | 3,235,912 | 35,595 | 35,595 | | 3,271,507 | 목표액 100억원 |

- 2018회계연도에는 총 6개 기금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8. 12. 31.자 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폐지하고 현재 양성평등기금 외 4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음.
- 그 중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는 조성된 기금이 5,000만원 또는 이자수입이 연 300만원 이상이 발생될 때 익년도부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4년(기금액 6,100만원)부터 사용은 가능하나, 2015년 2월 3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규모의 과소를 이유로 기금조성 1억원까지 기금사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18년까지는 사용실적이 없었으며,

-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조성액 목표를 100억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조성액이 목표액에 미달일 뿐만 아니라 기금조성의 주된 재원이 되는 군비 출연이 2015년 이후 중단됨으로써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융자 조건이 더 유리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융자금 이자율: 충북도 1%, 단양군 2%) 운영현황을 고려해 볼 때 융자 신청자도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 존치의 실익도 검토해봐야 할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 식품진흥기금은 법정 기금으로 현재 조성된 기금의 가용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시고
-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조성 및 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특단의 활성화 방안 강구 또는 계속 존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 치 결 과 | 완료 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수입 재원이 2억원이상 조성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적극투자 ○ 농업발전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 | 추진중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김진태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균형개발과 | 2018 | 주의 | | | |

제 목 :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단위: 백만원)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잔액(금고보관액) | 비고 |
|-------|-------|-----------|----|
| 6,216 | 942 | 5,273 | |

-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비고 |
|------|--------|--------|-------|--------|----|
| 세입총괄 | 10,647 | 10,647 | 6,216 | 6, 216 | |

| 구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지출잔액 | 비고 |
|------|--------|--------|-----|-------|----|
| 세출총괄 | 10,647 | 10,647 | 943 | 9,704 | |

-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일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산 편성 후에라도 실제 수입이나 지출이 예산액과 과도한 차이를 보일 경우 재검토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정리하였어야 하나,

- 위의 현황에서와 같이 2018년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 세입액을 실제 징수(결정)액의 171%에 달하는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과다 편성하고, 세출예산도 금고보관액(실제잔액) 5,273백만원의 184%에 해당하는 9,70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예산 편성은 가급적 정확한 추계를 통해 편성하여 재정자원이 불요불급한 부문이나 사업에 과다 편성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 특히 독립채산이 원칙이라고는 하나 일반회계의 전출재원이 주 수입원인 특별회계의 경우 소요 예산에 대해 더욱 철저한 추산을 통하여 일반회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 치 결 과 | 완료 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중 임대보증금과 순세계잉여금 1,645,086천원을 감액 - 세출예산 중 예비비 1,645,086천원을 감액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김진태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농업축산과, 보건소 | 2018 | 주의 | | | |

제 목 : 지역개발사업의 신속추진

《현황 및 문제점》

- 2018 당초예산 및 이월사업 착공현황(1억원 이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 계약일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
| | 구분 | 금액 | | | |
| 거점세척소독시설 건설사업 | 당초 | 377 | 2018.12.13. | 2018.12.19. | 2019.03.18. |
| 단양군립노인요양원 치매병동증축공사 | 이월 | 1,794 | 2018.12.12. | 2018.12.12. | 2019.07.09. |

- 당초예산사업 또는 전년도 이월사업 중 공사기간의 장기소요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연내에 공사 완료가 어려운 12월에 계약 및 착공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의 이월되고,
- 사업의 이월은 당초 계획의 달성으로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소요도 발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할 것 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공사자체는 물론 공사와 관련되어 예측 가능한 측 량설계의 조기착수나 필요한 주민과의 협의와 관련인허가획득 등 필수 적인 사항의 견실한 사전준비로 공사가 적기에 착공되어 가급적 연내 마무리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치결과 | 완료여부 |
|---|------|
| ○ 주민수혜적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주민과의 협의, 관련 인·허가 획득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기착공·준공될 수 있도록 자체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김진태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안전건설과 | 2018 | 주의 | | | |

제 목 : 부적절한 예산전용 지양

《 현황 및 문제점 》

- 구상금 청구소송관련 예산전용 현황

(단위: 천원)

| 세부 사업 | 통계목 | 예산액 | 전용액 | | 전용일자 | 비고 |
|----------|----------|---------|--------|--------|-------------|----|
| | | | 감액 | 증액 | | |
| 도로 | 사무관리비 | 148,500 | 40,000 | | 2018.09.07. | |
| | 배상금 | | | 40,000 | 2018.09.07. | |
| 유지 관리 | 재료비 | 258,500 | 85,000 | | 2018.09.07. | |
| | 배상금 | | | 85,000 | 2018.09.07. | |
| | 자산및물품관리비 | 256,000 | 50,000 | | 2018.11.30. | |
| | 재료비 | 173,500 | | 50,000 | 2018.11.30. | |

-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을 벗어나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 그러나 현황에서와 같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전용하고, 이로 인해 재료비가 부족하게 되자 다시 자산 및 물품관리비를 재료비로 전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운용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 예산전용시에는 전용해 주는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용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 치 결 과 | 완료 여부 |
|--|----------|
| ○ 사업계획수립의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예산편성과 부적절한 예산전용을 지양하도록 자체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김진태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전부서 | 2018 | 주의 | | | |

제 목 : 성과보고서 성과달성도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 성과달성도 현황

| 연도별 | 전 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 성과달성도 | | |
|-------|------------|--------|-----------|----------|------------|-----------|
| | | 개수 | 지표수 | 초과달성 | 달성 | 미달성 |
| 2017년 | 18 | 77 | 226(100%) | 22(9.7%) | 161(71.3%) | 43(19.0%) |
| 2018년 | 18 | 77 | 217(100%) | 11(5.0%) | 131(60.4%) | 75(34.6%) |
| 전년대비 | 0 | 0 | -9 | -11 | -30 | +32 |

-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자 제도로서
- 2018년 성과달성도는 표에서와 같이 전년대비 성과달성도를 단순히 지표수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초과달성과 달성도는 41개 지표가 줄고, 미달성은 32개 지표가 늘어 났으며,
- 결산액은 2017년 306,116백만원에서 2018년 337,828백만원으로 약 10%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성과목표달성도는 저조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 성과보고제도는 아직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재정운용에 환류함으로써 재원의 배분과 투자효과를 높여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을 인식하시고 목표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지표 설정과 목표 달성 노력을 통하여 성과달성도를 높여나가기 바람.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치결과 | 완료여부 |
|--|------|
| ○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성과목표를 합리적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성과보고서가 내실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부서별 자체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 완료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검사위원 : 김진태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 조 치 | 재 정 상 조 치 | | 비 고 |
|-------|------|------------|-----------|-----|-----|
| | | | 조치방법 | 금 액 | |
| 균형개발과 | 2018 | 주의 | | | |

제 목 : 국도비 보조금사업 자금미교부 집행

《 현황 및 문제점 》

○ 국도비 보조금 자금미교부 집행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 재원 구분 | 예산현액 | 보조금 수령액 | 집행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 받기반정비사업 | 국비 | 1,027,000 | 382,000 | 499,174 | 527,826 | -117,174 |
| | 도비 | 128,000 | 47,750 | 62,195 | 65,805 | -14,445 |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 국비 | 828,000 | 83,000 | 828,000 | 0 | -745,000 |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 국비 | 868,000 | 0 | 868,000 | 0 | -868,000 |
| 현곡리 새뜰마을사업 | 국비 | 1,100,000 | 809,000 | 1,100,000 | 0 | -291,000 |
| | 도비 | 90,300 | 70,300 | 90,300 | 0 | -20,000 |

- 받기반정비사업 외 3건의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미교부되었음에도 2,055,619천원을 군비로 대체하여 우선 집행하였음.
-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외 군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군비에서 집행하게 됨으로써 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미교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미교부 원인 및 교부시기 확인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교부촉구를 통하여 자금이 미교부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결과 및 완결여부

| 조치결과 | 완료여부 |
|--|------|
| ○ 보조금 교부현황을 수시로 파악 후 보조금 교부요청 등 자금확보조치를 하여 자금없는 집행이 되지 않도록 자체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 완료 |